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85호
2022. 6. 2.(목)



목 차

◆ 자치법규

[예 규]

제148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4
제14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6
제150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4

[입법예고]

제2022-1577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제2022-158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제2022-1591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1
제2022-1611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제2022-161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제2022-161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제2022-161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
제2022-1619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9
제2022-163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고 시

제2022-23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31
제2022-237호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32
제2022-240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1
제2022-241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준치지역)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81
제2022-242호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00
제2022-24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103

◆ 공 고

제2022-157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11
제2022-158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및 해산명령 공고	112
제2022-158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14
제2022-15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15
제2022-1595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변경 공시송달 공고	118
제2022-162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119
제2022-1629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제공람 공고	120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6호	2022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125
----------	--------------------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1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33
------------	----------------------------	-----

◆ 구 고 시

제2022-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134
제2022-8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137
제2022-103호	도시계획시설(2020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성북구)	139
제2022-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강북구)	140
제2022-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144
제2022-69호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145
제2022-70호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151
제2022-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서구)	156
제2022-87호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66
제2022-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171
제2022-10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 (강동구)	173

◆ 구 공 고

제2022-650호	도시관리계획(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중로구)	174
제2022-651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중로구)	176
제2022-40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중구)	177
제2022-76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을 위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공고(성북구)	179
제2022-7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성북구)	180
제2022-7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81
제2022-935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동작구)	185
제2022-114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186

◆ 사업소고시

제2022-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89
제2022-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89
제2022-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90
제2022-1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90
제2022-1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91
제2022-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91

◆ 기 타

제2022-9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192
-----------	--------------------------------	-----

◆ 정 정

제2022-238호	중랑구 목동 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정정 고시	193
제2022-2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정정고시	198
제2022-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동작구)	199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동작구)	200

자치법규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48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6월 2일

1. 개정이유

-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 조항을 개정
에 맞게 수정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입법예고 기간) 중 “5일(단, 초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 “5
일” 로 변경
- 제7조(공포대상)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 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5항” 으
로 변경, “같은 법 제26조제4항” 을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으로 변경
- 제10조(공포절차)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을 “「지방자치
법」 제32조제6항” 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5일(단, 초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 “5일” 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 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5항” 으로, “같은 법
제26조제4항” 을 “같은 법 제32조제4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5일(단, 초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 ----- 5일----- ----- -----, ----- ----- ----- -----.
제7조(공포대상)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이하 이 장에서 “조례”라 한다)는 의장이 공포한다.	제7조(공포대상) 「지방자치법」 제32조제5항 ----- 같은 법 제32조제4항-----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의장의 조례 공포문 예시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 ○ ○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의장의 조례 공포문 예시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 ○ ○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 년 월 일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6월 2일

1. 개정이유

- 2022. 1. 13. 자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회의록 관련 조항이 제72조에서 제84조로 변경됨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 근거 조항 변경(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단서규정(회의록의 비공개)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으로 변경(제17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2조”를 “「지방자치법」 제84조”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회의록”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6조 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기재한다.”를 각각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사일정 및 부의된안건의 표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앞에 ‘○’ 표(HNC코드 343B)를 한다.”를 “앞에 ‘○’ 표(HNC코드 343B)”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기재한다.”

를 각각 “기재” 로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발언은 ‘○○○○ 의원’ 으로 표기 제14조제1항 중 “부분은, 회의규칙 제36조 제3항” 을 “부분은 회의규칙 제36조제3항” 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 제4항” 으로, “(임시회의록 포함)에 게재” 를 “(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게재” 로,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 포함)에는” 을 “배부회의록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을 “법 제84조제4항”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이상은 ‘만’ 을 “이상은 ‘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용부호” “” 를 “인용부호 “ ” ”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제12호” 를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제12호” 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앞에는 ‘○’ 표(HNC코드 343B)를 한다.” 를 “앞에는 ‘○’ 표(HNC코드 343B)”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표기는 ‘○○○○ 위원’ 으로 한다.” 를 “표기는 ‘○○○○ 위원’ 으로 기재”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기재한다.” 를 각각 “기재”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아니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회의록에는 첨부한다)” 를 “아니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회의록에는 첨부한다.

제2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2조제1호 중 “앞에는 ‘○’ 표(HNC코드 343B)를 한다.” 를 “앞에는 ‘○’ 표(HNC코드 343B)”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한다.” 를 “기재”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표기한다.” 를 “표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재한다.” 를 “기재” 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을 “회의록” 으로 한다.

제37조 중 “서울시교육청” 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으로 한다.

제40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회회의록</u>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4조----- -----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록----- ----- -----.
제3조(한글전용) 회의록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한자나 영어를 병행하여 함께 쓸 수 있다.	제3조(한글전용)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u>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 -----.
제4조(속기의 범위) 회의록의 작성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의의 경과를 그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속기의 범위) ----- ----- ----- 제46조제2항----- -----.
제7조(표지작성) 개최식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 본회의 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표지에는 회수 및 회기종류, 회의명, 차수, 회의일시 등을 기재한다.	제7조(표지작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제8조(의사일정 및 부의된안건의 표기) 의사일정 및 부의된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한다. 1. 의사일정란에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부의된안건란에는 안건명과 함께 발의자와 제출자를 기재한다.	제8조(의사일정 및 부의된안건의 표기) ① ----- 각 호----- 1. ----- ----- -----

현행	개정안
2. 보고사항, 당선인사 등의 하위안건은 부의된안건란에 기재한다. 3. 의사일정 및 부의된안건의 표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9조(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 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회자를 포함한 모든 발언자의 직함·성명 앞에 ‘○’ 표(HNC코드 343B)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발언은 ‘○○○○ 의원’으로 표기한다. 3. 의장 등 사회자의 표기는 직함 다음에 성명을 기재한다. 4.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의 표기는 직함 다음에 성명을 기재한다. 제14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마이크가 차단된 후에도 계속하여 발언한 부분은, 회의규칙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투표의 표기) ① ~ ④ (생략)	----- 기재 2. ----- ----- 기 재 <삭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의 표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 ----- ----- -----. 1. ----- ----- 앞에 ‘○’ 표(HNC코드 343B)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발언은 ‘○○○○ 의원’으로 표기 3. ----- ----- 기재 4. ----- ----- 기 재 제14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36조제3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투표의 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기타 투표상황의 표기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불개재 부분의 표기) ① 의장이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 포함)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 포함)에는 게재하지 않고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한다. ② 제1항과 같이 불개재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을 표기한다. 제18조(숫자·단위·법조문 등의 표기) ① 모든 수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 단위 이상은 ‘만, 억, 조’로 표기한다. 다만, 불확정 숫자로서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한다. 제20조(서면질문·답변서, 발언보충서 등의 게재) ①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 발언보충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성명을 밝혀 부록으로 게재한다. ②·③ (생략)	⑤ 그 밖에 ----- -----. 제17조(불개재 부분의 표기)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4항 ----- (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게재----- - 배부회의록에는 ----- ----- -----. ② ----- ----- 법 제84조제4항 ----- ----- -----. 제18조(숫자·단위·법조문 등의 표기) ① ----- ----- 이상 은 ‘만-----’.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용부호 “ ” -----. 제20조(서면질문·답변서, 발언보충서 등의 게재) ①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제12호-----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1조(회의참석현황 등의 기재) ①·② (생략) ③ 출석공무원의 기재 범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다. ④ (생략)	제21조(회의참석현황 등의 기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표지의 작성) ① 위원회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표지에는 회수 및 회기종류, 회의명, 차수, 회의일시, 회의 장소 등을 기재한다. ② 폐회중에 개최된 위원회(특별위원회)는 전 회기의 ‘폐회중’ 으로 표기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생략)	제23조(표지의 작성) ① ----- 별지 제3호서식-----. ----- -----. ② ----- ----- ----- 별지 제4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사일정과 심사된 안건의 표기) ① (생략) ②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회의록의 표기방식을 준용한다.	제24조(의사일정과 심사된 안건의 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 -----.
제25조(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 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회자와 모든 발언자의 직함·성명 앞에는 ‘○’ 표(HNC코드 343B)를 한다. 2. 상임위원회 위원의 표기는 ‘○○○○ 위원’ 으로 한다. 3. 위원장 등 사회자의 표기는 직함 다음에 성명을 기재한다.	제25조(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 ----- ----- -----. 1. ----- ----- 앞에는 ‘○’ 표(HNC코드 343B) 2. ----- 표기는 ‘○○○○ 위원’ 으로 기재 3. ----- ----- 기재

현행	개정안
4. 국·실장, 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의 표기는 직함 다음에 성명을 기재한다.	4. ----- ----- ----- 기재
제26조(각종 보고서 및 의안의 첨부) ① (생략)	제26조(각종 보고서 및 의안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결산안은 회의록에 첨부하지 아니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회의록에는 첨부한다). <단서 신설>	② ----- ----- 아니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회의록에는 첨부한다.
제27조(출석상황 등의 기재) ①·② (생략)	제27조(출석상황 등의 기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출석공무원의 기재 범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표지의 작성)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회의록은 아래의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회의록은 아래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0조(표지의 작성)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 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제32조(사회자와 발언자의 표기) ----- ----- -----.
1. 사회자와 모든 발언자의 직함·성명 앞에는 ‘○’ 표(HNC코드 343B)를 한다.	1. ----- ----- 앞에는 ‘○’ 표(HNC코드 343B)
2. 피감사기관장, 증인, 참고인 등의 표기는 위원회(특별위원회) 예에 따라 직함과 성명을 기재한다.	2. ----- ----- -- 기재
3. 직함이 없는 경우는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표기한다.	3. ----- ----- 표기

현행	개정안
4. 위원장 등 사회자의 표기는 직함 다음에 성명을 기재한다. 제35조(회의록 발간 및 공표) ① <u>서울특별시의회</u> 회의록은 전자회의록과 책자회의록으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②·③ (생략) 제37조(회의록 배부) 회의록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배부용 책자회의록은 의사담당관,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의회전문도서관, <u>서울시교육청</u>에 각각 배부하고 보존용 책자회의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4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u>관하여</u>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4. ----- ----- <u>기재</u> 제35조(회의록 발간 및 공표) ① <u>회의록</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회의록 배부) -----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u> ----- -----. 제40조(위임규정) ----- <u>필요한</u> ----- -----.

◆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50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6월 2일

1. 개정이유

- 2022. 1. 13. 자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단서규정(회의록의 비공개)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으로 변경(제2조제1호나목,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록”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위원회”를 “위원회를 말한다.”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을 “법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을 “법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을 “법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의회 및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을 각각 “법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제3조 제5항 관련”을 “제3조제5항 관련”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u> (이하 “ <u>회의규칙</u> ”이라 한다)에 의한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u> (이하 “ <u>회의록</u> ”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배부·공표·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u> 」에 따른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u> ----- ----- ----- -----.
제2조(회의록 구분) <u>회의록</u> 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2조(회의록 구분)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u> (이하 “ <u>회의록</u> ”이라 한다)----- -----.
1. 책자회의록	1. -----
가. 보존회의록 : <u>회의규칙 제47조제1항</u> 또는 <u>제62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여 <u>서울특별시의회</u> 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가. ----- 「 <u>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u> 」(이하 “ <u>회의규칙</u> ”이라 한다) <u>제47조제1항</u> ----- -----
나. 비공개회의록 :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u>위원회</u> , 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u>회의규칙 제49조제1항</u>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나. ----- ----- <u>위원회를 말한다.</u> ----- ---- 「 <u>지방자치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u>제84조제4항</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록의 작성) ①·② (생략)	제3조(회의록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원고가 <u>회의규칙 제49조제1항</u>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게재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③ ----- ---- <u>법 제84조제4항</u> ----- -----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⑤ 위원장 또는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불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u>별지 제5호 서식</u>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① 보존회의록은 <u>회의규칙 제49조제1항</u>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영구보존한다. ② (생략)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등) ①·② (생략) ③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후 <u>회의규칙 제49조제1항</u> 단서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제9조(자구 정정) ① (생략) ② 자구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u>각호</u>의 경우에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별지 제5호서식</u> ----- ----- -----.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① ----- <u>법 제84조제4항</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법 제84조제4항</u> ----- ----- -----. 제9조(자구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각 호</u>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77호****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중에서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모호한 표현을 “약전지(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로 개정하여 명확한 원칙을 수립함(안 제7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1) FAX : 02-2133-1082
- (2) E-mail : acecbg02@seoul.go.kr
-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조경과 ☎02-2133-2127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8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립봉안시설 봉안안치 이용자 증가로 인한 만장 도래로 추가 봉안 중단에 따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상 시립봉안시설 사용대상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규정을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합장안치만 허용함’으로 변경
 - 현행 사용대상자의 신규 봉안 중단,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봉안자의 합장안치는 허용 (단, 부부단 이전안치 불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 (1) FAX : 02-2133-0720
- (2) E-mail : nocord@seoul.go.kr
-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34)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91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제정이유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장애 청년제대군인 및 장애 청년 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함(안 제1~3조)

나. 시장은 군 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7조)

라. ‘지원센터’의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1) 팩스(FAX) : 02-768-8864

(2) 이메일(E-mail) : door40s@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다.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33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1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 삭제(안 제23조)

나. 분과위원회의 명칭 정비(안 제28조)

다.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개정(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1) FAX : 02-2133-4911

(2) E-mail : bbohyo@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02-2133-4709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기구(위원회) 신설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우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 → 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 → 30일) 정비(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안 제2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768-8945

(2) E-mail : arkatrax@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02-2133-5390)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안 제4조의2)
- 나.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 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안 제11조)
- 다. 시의 귀책 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 라.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 마.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같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1) FAX : 02-2133-1031
 - (2) E-mail : buru623@seoul.go.kr
 -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02-2133-3280)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를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 실시 주체로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 전승교육사의 추천(안 제4조)
 - 인정의 고시(안 제6조)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안 제7조제1항)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안 제9조)
 -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안 제12조제1항)
 - 인정 해제의 고시(안 제13조)
 - 변경신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안 제17조~제19조)
- 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 다.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 라.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제3호의3서식 등)
- 보유자 등 인정서 서식을 인정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서식 중 오기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역사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2133-2617, FAX: 2133-1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2) 이메일: chafuture@seoul.go.kr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9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22. 4. 28.)으로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유 등을 신설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나.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및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보내실 곳

- (1) FAX: 02-2133-0752
-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 (3) 이메일 : autumn499@seoul.go.kr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3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별표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률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함(안 별표).

나.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 02-2133-523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 보내실 곳

가.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나. 이메일 : yhj0202@seoul.go.kr

다.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6호

제3중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평창3교	평창동 436~451	종로구 도로과	- 다중이 이용하는 교량시설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제3중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손상에 대해 보수·보강 실시	
평창4교	평창동 414~419	종로구 도로과			
평창5교	평창동 411~419	종로구 도로과			
신명교	신명동 136~162	종로구 도로과			
옥천3교	세검정길~홍지동 36-7	종로구 도로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7호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69호(2020.7.16.)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정 공고된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서울시 광진구 구의역 일대	약 180,000㎡	-

다.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1) 비전 : 미가로 명소화를 통한 더 먹거리, 지역산업을 통한 더 일자리, 스마트기술을 통한 더 할거리
- 2) 목표 및 전략

목 표	활성화 전략
지역문화 특화공간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미가로 보행환경 정비 및 다목적 광장조성 기계식 주차시설 기능개선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상생협력상가(순환형 공공임대상가) 조성 공실활용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스마트 상권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스마트기술 및 생활SOC 확대를 통한 주거지 환경정비	주거지 보행환경 안전성 강화 및 스마트 안심보행 서비스 구성 생활SOC 조성(주민 생활편의 지원) 및 도입 프로그램 구성(주민의견 반영)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도시재생사업 및 파급효과

○ 마중물사업: 3개 부문, 5개 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지역명소 상권 활력	길고 싶은 '美가로' 조성사업	•미가로 보행환경정비 •다목적 광장 조성 및 미디어파사드 운영	•보행중심환경 조성으로 미가로 가로활력 증대 •미가로 진입관문 상징성 확보 및 지역정체성 강화 •편의성 확대로 방문객 증진 기대
	미가로 주차시설 개선사업	•기계식 주차시설 기능정비 •자전거 거치대 정비	•미가로 방문객 접근성 편의 증가 •자전거, 보도 등 주변지역 접근성 개선 •단절된 상권(철단업무지구)과의 심리적·물리적 단절 극복, 연결성 강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상생협력상가(순환형 공공임대상가) 조성 •공실활용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스마트상권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역 상권내 공실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자의 창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직업역량 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청년 상주인구 증가로 지역활력 증대
스마트 산업 주거지 정비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사업	•주거지 보행환경 안전성 강화 •스마트 안심보행 서비스 구성	•생활 안전확보 및 주거지역 빛공해 저감, 보행안전 제고 •공중선 정비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주민불편해소 기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범죄예방, 범죄대처 가능 등 거주자 안전성 확보
	생활SOC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조성 •가구변화에 따른 생활 SOC도입	•지역 내 생활편의성 증진 •지역 내 소통 공간 확보로 네트워크 확대
현장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 거버넌스 형성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지원조직 및 현장 컨트롤타워 마련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공감대 확장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 복합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 •주민/상인 소통 창구 확대 •마중물 사업 지원·운영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사업 : 6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광진구-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	●건대입구역 바이오-그린 특화, 구의역 ICT-AR 특화 및 지역상생모델 구축(혁신공유대학 연계)
구의역 하부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	●구의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공사 ●역사 양측 도보영역 조명기구 설치
공중케이블 정비강화	●한전 및 통신사업체 집중 정비 실시 후 합동점검 ●공중케이블 정비요청(10개 통신업체)
거리가게 시설물 시범도색 등 환경정비 개선	●시설물 청소 및 도색작업 실시 ●외부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439세대) ●광진구 주민공동시설 공공기여 ●구의역 1번출구 방면 보행연결로 개설
자양1축진구역 첨단업무 복합개발 추진	●공동주택 공급(1,363세대) ●공공청사, 업무, 호텔·오피스텔 설치 ●KT 우수계열사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계획

사업명			사업비(억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공기업
합계			287.05	-	287.01	0.04	-
마중물 예산 소계			200.00	-	200.00	-	-
마중물사업	1	건고 싶은 ‘美가로’ 조성사업	34.27	-	34.27	-	-
	2	미가로 주차시설 개선사업	14.50	-	14.50	-	-
	3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지원사업	16.90	-	16.90	-	-
	4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사업	17.80	-	17.80	-	-
	5	생활SOC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00.74	-	100.74	-	-
	6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5.79	-	15.79	-	-
연계사업 예산 소계			87.05	-	87.01	0.04	-
연계사업예산	1	광진구-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	80.0	-	80.0	-	-
	2	구의역 하부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	6.90	-	6.90	-	-
	3	공중케이블 정비 강화	0.04	-	-	0.04	-
	4	거리가게 시설물 시범 도색 등 환경정비 개선	0.11	-	0.11	-	-
	5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	-	-	-
	6	자양1축진구역 첨단업무 복합개발 추진	-	-	-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산 집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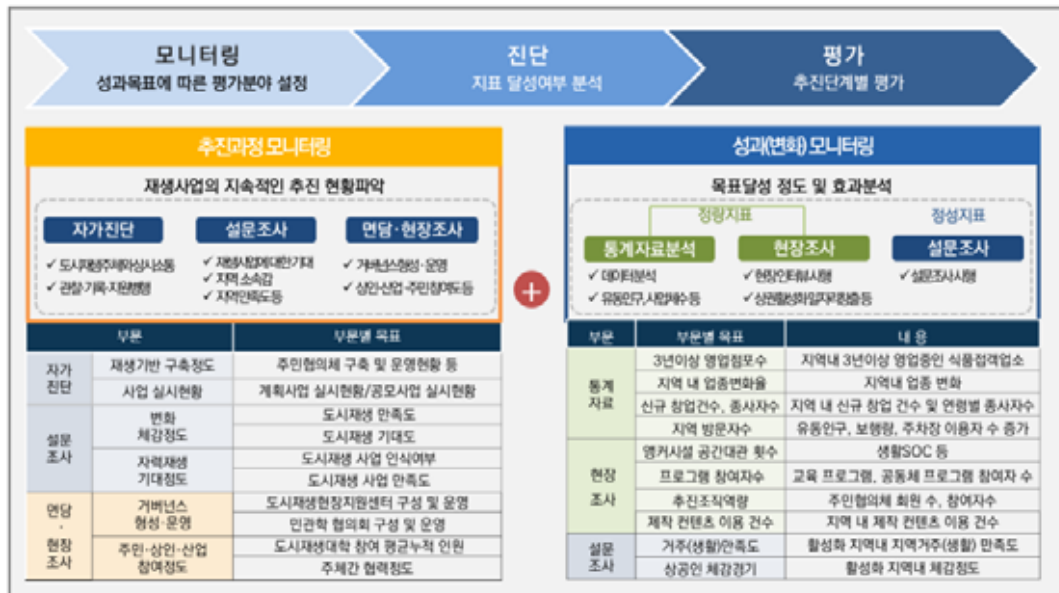
사 업 명		사업비(억원)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마중물 사업 합계		200.00	4.00	8.49	11.96	108.64	57.87	5.74	3.30
1	견고 싶은 ‘美가로’ 조성사업	34.27	-	0.66	8.94	16.27	5.20	2.60	0.60
2	미가로주차시설 개선사업	14.50	-	-	-	10.00	4.50	-	-
3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지원사업	16.90	-	0.70	-	6.30	4.50	2.70	2.70
4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사업	17.80	-	1.30	1.27	9.00	6.23	-	-
5	생활SOC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00.74	-	-	-	65.23	35.51	-	-
6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5.79	4.00	5.83	1.75	1.84	1.93	0.44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1) 평가 및 점검계획

- 재생사업의 비전 및 목표실현을 고려하여 단계적 평가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결과평가 및 환류



<모니터링 평가 추진절차>

2) 모니터링 계획

○ 추진과정 모니터링

부 문		부문별 목표
자가진단	재생기반 구축정도	주민협의체 구축 및 운영현황 등
	사업 실시현황	계획사업 실시현황/공모사업 실시현황
설문조사	변화 체감정도	도시재생 만족도
		도시재생 기대도
	지역재생 기대정도	도시재생 사업 인식여부
		도시재생 사업 만족도
면담 · 현장조사	거버넌스 형성·운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민관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상인·산업 참여정도	도시재생대학 참여 평균누적 인원
		주체간 협력정도

○ 성과 모니터링

[성과(변화)과정 모니터링]

부 문	부문별 목표	내 용
통계자료	3년이상영업점포수	지역내 3년이상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지역 내 업종변화율	지역내 업종 변화
	신규 창업건수, 종사자수	지역 내 신규 창업 건수 및 연령별 종사자수
	지역 방문자수	유동인구, 보행량, 주차장 이용자 수 증가
현장조사	프로그램 참여자수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
	추진조직역량	주민협의체 회원 수, 참여자수
	제작 콘텐츠 이용 건수	지역 내 제작 콘텐츠 이용 건수
설문조사	거주(생활)만족도	활성화 지역내 지역거주(생활)만족도
	상공인 체감경기	활성화 지역내 체감정도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계획]

구 분		항 목	내 용
견고 싶은 ‘美가로’ 조성사업	미가로 보행환경 정비	유동인구 수	통계자료
		보행량 증가율	계측조사
		보행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광장조성 및 체험공간 운영	광장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미가로 주차시설 개선사업	기계식 주차시설 기능정비	불법주차 감소수	통계자료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	계측조사
	자전거 거처대 정비	가로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자전거보관함 이용률	계측조사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상생협력상가(순환형 공공임대상가) 조성	상생협력상가 입주점포수	통계자료
		상생협력상가 매출액	통계자료
	공실활용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인큐베이팅 후 창업 건수	통계자료
		연령별 종사자 수	통계자료
	스마트 상권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3년 이상 영업 점포 수	통계자료
		상권 매출액	계측조사
		지역 내 업종변화율	계측조사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사업	주거지 보행환경 정비	유동인구 수	통계자료
		보행량 증가율	계측조사
		보행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생활 SOC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생활 SOC 조성	생활SOC 방문자 수	계측조사
		프로그램 운영 건수	계측조사
		시설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마중물사업 지원 건수	계측조사
		주민협의체 참여자수	계측조사
		도시재생활성화 홍보 건수	계측조사
공통		운영비 절감률	계측조사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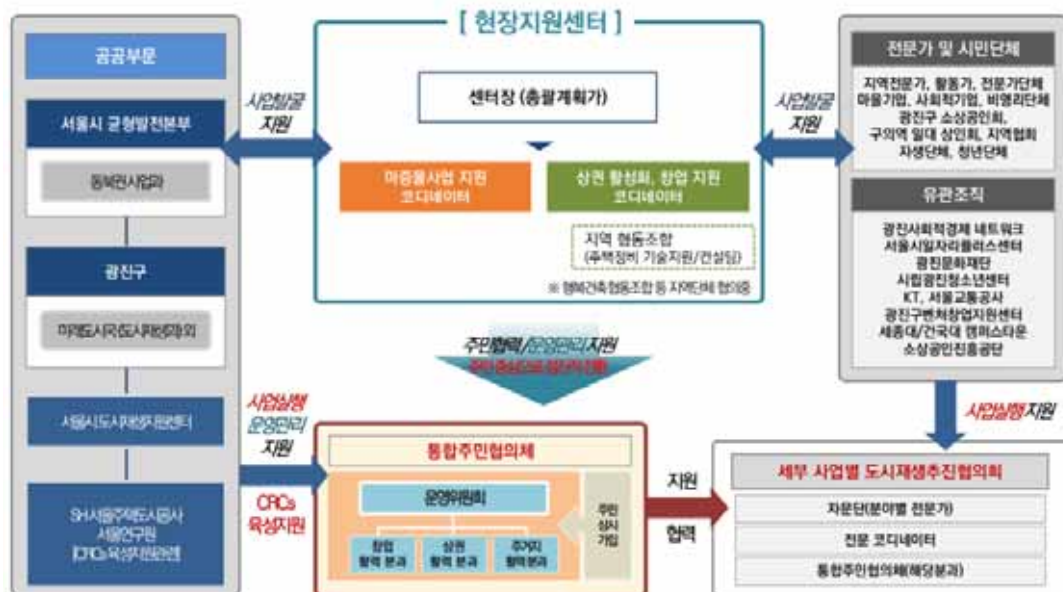
1)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할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 (행정)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 실행의 행정적 지원조직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광진구 미래도시국(도시재생과)외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추진 총괄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마중물 사업 지원·운영	- 센터장 - 분야별코디네이터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구의역 일대 주민주도조직을 사업 목표별로 조직화 체계화 하여 창업, 상권, 주거지 활력 분과 등으로 구성 운영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 조직으로 소통의 창구 - 주민 공동체 활동 실행 및 참여	- 통합주민협의체 - 창업 활력 분과 - 상권 활력 분과 - 주거지 활력 분과
사업추진협의회	- 사업추진 단계의 의사결정기구 - 활성화 사업 실행계획 협의 결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전담 조직, 주민협의체 분과별 대표

2)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참여 주체별 역할 정립 및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주민-행정-전문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협의회 및 조직의 확장·연계 도모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3. 관련 도면 : 붙임참조

- 1) 위치도 1부.
-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1부.

4.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2133-8296) /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재생과(☎ 02-450-/1464) / 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 02-453-9245)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위 치 도



붙임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0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8-2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378 (2016.11.17.)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022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2.3.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광진구 중곡4동 18-24번지 일대	-	증)15,757.8	15,757.8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총 계		15,757.8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978.4	6.2	
	도 로	978.4	6.2	도로 기부채납 : 978.4㎡
획 지	소 계	14,779.4	93.8	
	획지1	14,779.4	93.8	

3.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757.8	-	15,757.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757.8	-	15,757.8	100.0	

4.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0.4	-	100.4	100.0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00.4	-	100.4	100.0	

※ 구역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면적

5.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21	중곡동 18-67	중곡동 18-136	일반 도로	-	1964.1.24 (건고제768호)	구역 내 978.4m ²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m ²)	계획면적 (m ²)	비고
계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수 x 2.5m ² x 1.25	953.1	1,320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155m ² 이상	155m ² 이상	160.0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198m ² 이상	198m ² 이상	200.0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200m ² + (세대수 x 1m ²)	505m ² 이상	600.0 목외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미만	해당사항 없음	-	-
	작은도서관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108m ² 이상	108m ² 이상	110.0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m ² + (세대수-50) x 0.05m ² 이상	22.7m ² 이상	50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	-	-	200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15,757.8	획지1	14,779.4	광진구 중곡4동 18-24번지	13	-	-	13	-	공동 주택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15,757.8	획지1	14,779.4	광진구 중곡4동 18-24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184% 이하	200% 이하	최고 40m (최고 12층)이하 /평균 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305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305		100.0		-				
			공동 주택	60㎡		178		58.4		공동주택 15세대 포함			
				60㎡ ~ 85㎡이하		75		24.6		-			
85㎡초과		52		17.0		-							
심의완화 사항			•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 : 3m • 용마산로 24길 : 4m										
기타사항			• 층수/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용곡초등학교 운동장레벨(+68.5m)이하로 계획하되, 통경축 확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2호 조합 3개동 이하 12층까지 계획 가능 • 공공기여 - 학교 통학 시, 장애인에 위한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등을 대상지 내 계획 • 입체적 통경구간 - 용마산로변에서 용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입체적 통경구간 설정하여 용마산 경관 공유 - 입체적 통경구간은 가급적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배치시, 용곡초등학교 운동장 레벨(+68.5m) 이하로만 가능 • 개방형시설 배치구간 - 용마산로 24길 및 학교변에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 개방형시설의 배치 구간은 지침도를 따름 •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용마산로 24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 가로활성화 용도의 배치 구간은 지침도를 따름 • 보행동선 - 남측 보행출입구는 용마산로 22길과 위치를 맞춰서 연결 ※ 보행출입구에 건축물 배치 지양										

나. 용적률계획

구 분		산정내용					비고
		계(구역면적)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이용계획		15,757.8㎡	14,779.4㎡	978.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면적)		●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978.4 - 0 - 0 = 978.4㎡(6.2%)					도로
개발 가능 용적률 산정	기준 용적률	●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허용 용적률	● 170%					
	상한 용적률	● 184% = 허용용적률 × (1+1.3 α) = 170% × (1+ 1.3 × 0.0662)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978.4㎡ ÷ (15,757.8㎡ - 978.4㎡) = 978.4㎡ ÷ 14,779.4㎡ = 0.0662					
정비계획 용적률		● 184%					
법적상한 용적률		● 200%					

※ 22.03.07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의견

- 건축위원회 심의 시 21.11 공람(안) 허용용적률계획(녹색건축인증 6%, 지능형건축물 6%)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다.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공공주택)	세대규모	비고(연면적)
획지 1	14,779.4	10	15	전용46㎡(4세대) 전용59㎡(11세대)	1,230.5㎡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정비계획용적률		• 184.0%				
법적상한용적률		• 200.0%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200.0\% - 184.0\% = 16.0\%$				
	증가된 용적률의 50%	$16.0\% \times 0.5 = 8.0\%$ $14,779.4\text{m}^2(\text{대지면적}) \times 8.0\% = 1,182.3\text{m}^2$				
	의무 연면적	• 1,182.3㎡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회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46.90㎡	71.40㎡	4	285.6㎡	확지1
		59.90㎡	85.90㎡	11	944.9㎡	확지1
		합 계		15	1,230.5㎡	> 1,182.3㎡ (의무)

9.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계획부문

구 분	내 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170%이하, 허용용적률 : 17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 184%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200% 이하
건폐율	• 60%이하로 계획
층수/높이	- 평균10층/최고12층이하 - 건축물의 높이는 용곡초등학교 운동장레벨(+68.5m)이하로 계획하되, 통경축 확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2호 조합 3개동 이하 12층까지 계획 가능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5.0%이상 - 도로기부채납 면적 978㎡(6.2%) ※ 남측도로(용마산로 24길)는 용마산로에서 학교통학로 계단 끝까지 일체적 조성
공공기여	• 학교 통학 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등을 대상지 내 계획

구 분	내 용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 : 3m • 용마산로 24길 : 4m
입체적 통경구간	• 용마산로변에서 용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입체적 통경구간 설정하여 용마산 경관 공유 • 입체적 통경구간은 가급적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배치시, 용곡 초등학교 운동장 레벨(+68.5m) 이하로만 가능
개방형시설 배치구간	• 용마산로 24길 및 학교변에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 ※ 개방형시설의 배치 구간은 지침도를 따름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용마산로 24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 가로활성화 용도의 배치 구간은 지침도를 따름
보행동선	• 남측 보행출입구는 용마산로 22길과 위치를 맞춰서 연결 ※ 보행출입구에 건축물 배치 지양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용도 불허 4층이하 연립주택만 가능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용적률 적용체계	일반 건축물 용적률체계 적용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적용		
	기준	허용	상한	기준	허용	상한
	190%	200%	법적 용적률에 2배 이하	170%	190%	250%
높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24m			40m(평균10층/최고12층 이하) 심의에 따른 구릉지 층수완화 (공공기여 5% 이상) 적용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대지경계선 : 3m • 용마산로 24길 : 4m		

- ※ 건축물의 높이는 용곡초등학교 운동장 레벨(+68.5m) 이하로 계획하되, 통경축 확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2호조합 3개동 이하 12층까지 계획 가능
 ※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은 향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정합성 유지
 ※ 「신항빌라 신속통합기획 보고서」 확정된 세부계획지침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항빌라 신속통합기획 보고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건축계획부문

구 분	내 용
특별건축구역지정	-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계획 - 특별건축구역의 완하기능 규정을 적용하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산정하고, 남향세대 및 일조만족 세대 최대화 등 주거성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계획
세대수	-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으로 계획 ※ 특별건축구역 운영가이드라인(21.11.3)제13조에 따라 공동주택 특례사항 적용 건축물 100세대 이상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은 동쪽(용마산)에서 서쪽(용마산로)방향으로 낮아지도록 계획
주거동 유형	지형순응형 테라스 하우스 적극 도입
교통 및 동선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 - 대상지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단지 내 동선계획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개방형시설은 학교와 연계하여 주거동 진입레벨 및 옥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주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설치
주민공동시설	- 통학로와 연결하는 브릿지 계획 ※ 브릿지는 장애인 동선을 고려하여 수직동선과 함께 계획
입면계획	다양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 계획을 통해 입면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입체감을 부여하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획 제시
옥탑부 및 옥상 특화계획	용마산로24길과 학교변에 면한 주거동 최상층에는 학교와 연계한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옥상층 조망을 공유

- ※ 「신항빌라 신속통합기획 보고서」 확정된 세부계획지침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신항빌라 신속통합기획 보고서」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테라스하우스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 ※ 22.02.10.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결과
-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엘리베이터 수요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위치 검토
- ※ 22.03.07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 사업시행인가 전 통학로와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운영주체를 결정할 것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상지 동측 도로계획 관련 학교로 연계되는 현황 계단 경사도 조정 가능성 검토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자연 지형을 고려한 균형있는 절성토계획으로 토지의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생활환경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본 사업대상지는 계획된 공동주택지의 조경식재 수목으로서 사업시행시 양호한 수목은 재식토록함	해당시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 생태면적율	30% 이상	○	• 주택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시 행에 따른 일부 수목훼손이 예상됨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 준 이상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대상지 내 주택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음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3. 지형변동	절성도균형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 공량 발생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4. 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 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 능 향상
생활 환경	5. 일조	-	-	• 대상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북 측: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서울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설계기준 반 영
	8.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 건물배치 계획변화에 따라 경관변화 예상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계획 수립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옥상녹화,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 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상지 단절되는 보행로 없음	• 보행공간 확충으로 가로흐름 연속성 부여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자전거보관소	○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검토 필요	
추가	11.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광진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12.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규	재건축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신항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56	305	149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동측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14.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역 일대	392,337.0	-	392,337.0	1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2,337.0	-	392,337.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19,498.4	-	219,498.4	55.9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161.3	-	123,161.3	31.4	-
준주거지역	49,677.3	-	49,677.3	12.7	-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가능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8	용마산길 중곡동길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망우동359-2 ~중곡동92-9	127,200 (16,800)	5,300 (712)	양측12	1982.4.22 (서고 제164호)	서고 제2008-431호 (2008.12.4)변경
기정	14	능동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중곡동291-1 ~중곡동647-15	29,712 (14,400)	1,238 (678)	양측12	1982.4.22 (서고 제164호)	서고 제2008-431호 (2008.12.4)변경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41	7,790	3	495	8	1,505	30	5,790
대 로	2	1,398	-	-			2	1,398
중 로	1	525	-	-			1	525
소 로	38	5,867	3	495	8	1,505	27	3,867

■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6	35~48 (28)	주간선 도 로	3,750 (677)	중곡동169	성수동2가72	일반 도로	-	1973.2.28 (건고제73호)	
기정	대로	3	47	25~28 (25~28)	보조간선 도 로	4,500 (721)	능동 (광로5)	면목동 (대3-42)	일반 도로	-	1976.7.19 (건고제109호)	
기정	중로	3	57	12	집산도로	1,120 (525)	송정동 62-5	군자동80-1	일반 도로	-	1976.12.9 (서고제334호)	면목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5 (72)	중곡동 297-15	중곡동 296-1	일반 도로	-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12	중곡동 28-1	중곡동 34-8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1길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1	중곡동 21-11	중곡동 271-2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2길
기정	소로	2	1	8~10 (10)	국지도로	261	중곡동 168-1	중곡동 170-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03	중곡동 167-13	중곡동 165-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9	중곡동 29-56	중곡동 29-5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1	중곡동 18-67	중곡동 18-136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4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87	중곡동 18-7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111	중곡동 18-100	일반 도로	-	"	-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73	중곡동 18-136	중곡동 18-1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11	중곡동 170-25	중곡동 170-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26	중곡동 167-1	중곡동 172-59	일반 도로	-	"	능동로 53길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7-4	중곡동 167-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172-54	중곡동 172-16	일반 도로	-	1964.1.24 (건고제768호)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6-41	중곡동 166-1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193-52	중곡동 220-2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8	중곡동 165-10	중곡동 165-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70	중곡동 230-10	중곡동 221-4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9	6~8 (8)	국지도로	130 (112)	중곡동 170-2	중곡동 171-2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73	중곡동 193-1	중곡동 193-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21-47	중곡동 22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30-1	중곡동 230-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	6~10 (8~10)	국지도로	172 (159)	중곡동 29-70	중곡동 266-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1	중곡동 3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212	중곡동 31-38	중곡동 34-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1-3	중곡동 31-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2-9	중곡동 32-2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53	중곡동 33-43	중곡동 33-3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87	중곡동 24-2	중곡동 35-4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82	중곡동 150-107	중곡동 35-12	일반 도로	-	"	-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59	중곡동 35-65	중곡동 150-15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34	중곡동 297-15	중곡동 180-2	일반 도로	-	"	용마산로 28길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81	중곡동 296-7	중곡동 296-4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2	중곡동 150-72	중곡동 150-42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71-2	중곡동 150-42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154	중곡동 23-1	중곡동 150-4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7	4	국지도로	198	중곡동 29-29	중곡동 29-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31	중곡동 29-7	중곡동 29-16	일반 도로	-		

■ 철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일대~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43,760.0	B=10~30m L=43.76km	-	중곡역 (7호선)

■ 철도 부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중곡동 273-2	4,925.7	1991.7.15 (건고 제399호)	중곡역 (7호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	중곡동 166-14 앞	363.0	1992.12.14 (서고 1992-420호)	-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주차장	중곡동 221-6 221-37	811.7	2009.1.2 (광진구고시 제2008-55호)	노외 주차장
기정	-	주차장	중곡동 230-12	1,757.4	1999.4.27 (광진구고시 제1999-13호)	노외 주차장
기정	-	주차장	중곡동 29-1	4,375.0	1999.4.27 (광진구고시 제1999-13호)	중복결정 지상: 공공공지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중곡동 30-1	1,276.7	-	1,276.7	-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4,375.0	-	4,375.0	-	중복결정 지하: 주차장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시장	-	중곡동 229-5번지 외 1필지	3,796.3	1973.8.18 (건고 제61호)	중곡제일 골목시장 (광성시장)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학교	초등학교	중곡동 220-22일대	5,616.6	-	5,616.6	1982.2.4 (서고 제50호)	중광 초등학교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체육시설	-	중곡동 168-8	3,690.0	-	3,690.0	2004.12.27. (서고 제2004-422호)	중곡문화체 육센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결정조서

■ 주거지역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가구면적(m ²)	비고
기정	GR-1	중곡동 168-1 일대	15,3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공공시설 도로 234.4m) 준주거지역
기정	GR-2	중곡동 167-1 일대	3,086.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	중곡동 166-1 일대	8,452.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4	중곡동 165-1 일대	7,462.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5	중곡동 16 일대	6,153.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6	중곡동 29-29 일대	5,118.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7	중곡동 29-3 일대	5,614.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8	중곡동 30-1 일대	40,917.7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9	중곡동 31-1 일대	7,612.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0	중곡동 170-1 일대	7,184.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1	중곡동 171-1 일대	5,534.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2	중곡동 172-1 일대	10,840.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3	중곡동 193-1 일대	9,741.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4	중곡동 220-1 일대	13,16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5	중곡동 230-1 일대	6,861.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6	중곡동 229-1 일대	3,730.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7	중곡동 221-1 일대	7,325.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8	중곡동 30-2 일대	11,1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19	중곡동 32-1 일대	6,761.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0	중곡동 33-1 일대	8,369.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1	중곡동 34-1 일대	7,290.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2	중곡동 35-1 일대	12,345.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3	중곡동 24-1 일대	7,951.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4	중곡동 28-1 일대	5,400.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5	중곡동 21-1 일대	7,058.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6	중곡동 23-1 일대	7,109.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7	중곡동 271-1 일대	2,723.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8	중곡동 18-67 일대	3,098.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29	중곡동 18-76 일대	5,18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0	중곡동 18-100 일대	5,186.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1	중곡동 18-124 일대	2,886.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2	중곡동 18-19 일대	8,194.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3	중곡동 18-24 일대	14,779.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4	중곡동 18-1 일대	2,766.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5	중곡동 18-2 일대	4,383.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GR-36	중곡동 297-1 일대	2,380.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공공용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GR-1	중곡동 168-8대	3,690.0	중곡문화 체육센터
	GR-8	중곡동 30-75대	187.6	중곡역
	GR-8	중곡동 30-77대	35.8	중곡역
	GR-8	중곡동 29-1대	5,348.8	공공공지(주차장)
	GR-14	중곡동 220-22학	5,616.6	중광초등학교
	GR-15	중곡동 230-12차	1,757.4	주차장
	GR-16	중곡동 229-5대	2,242.6	중곡시장
	GR-16	중곡동 229-15대	1,553.7	중곡시장
	GR-17	중곡동 221-6차	695.0	주차장

2) 대지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비 고
간선부	2,000㎡	능동로 및 용마산로변 일대
이면부	1,000㎡	배후주거지역

※ 기개발지, 동일소유필지,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계획 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 능동로변은 개별건축시 간선부 2,000㎡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하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하지 않음

3) 획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및 공동개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능동로변 (9개소 - 38,744.0㎡)	능동로변에 적정개발규모유도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된 일단의 지역으로 향후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	용도지역 상항시 20%이상 공공기여
공동 개발	지정	- 기 공동개발 필지 및 동일소유 필지 - 과소필지	- 주변 지역과의 연속성 확보 및 획지 정형화 유도 - 지역 위계에 부합하고 특정용도 입지가 가능 하도록 적정개발 규모 확보	-
	권장	- 개발규모의 정형화가 필요한 필지 - 부정형 필지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예상 되는 경우		
자 율 적 공동개발		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제외)	- 주변과 연계된 적정개발규모 유도 - 제외대상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대지 발생시 - 세장비(장단변의 비)가 1:3이상이 되는 경우 - 차량진출입 불가능 대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조 참조

■ 대지분할 가능선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분할 가 능 선	- 대지형태의 정형화 유도가 필요한 대지 -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대지	대형대지의 분할가능한 위치를 지정	국립서울병원 부지

■ 획지 및 필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GR - 1	1	168 - 2대	9,497.2	9,497.2	특별계획구역	-					
		2	168 - 3대 168 - 4대	152.4 152.7	305.1	공동개발(권장)						
	GR - 2	1	167 - 1대 167 - 11대 167 - 21대 167 - 2대 167 - 3대 167 - 4대 167 - 6대 167 - 7대 167 - 8대 167 - 9대 167 - 5도 167 - 12도 167 - 13대 167 - 14대 167 - 15대 167 - 16대 167 - 17대 167 - 18대 167 - 19대 167 - 20대 167 - 22대 167 - 23대	165.6 152.4 316.7 151.4 152.4 163.6 108.4 91.9 93.6 115.0 78.3 73.7 138.8 130.9 129.9 160.3 170.9 158.0 153.4 133.9 130.2 117.0	634.7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876.3	공동개발(권장)								
			1,575.3	-								
			GR - 3	1	166 - 3대 166 - 4대 166 - 34대 166 - 6대 166 - 30대 166 - 31대 166 - 7대 166 - 8대 166 - 28대 166 - 29대 166 - 1대 166 - 2대 166 - 5대 166 - 21대 166 - 22대 166 - 23대 166 - 24대 166 - 25대 166 - 26대 166 - 27도 166 - 32대 166 - 33대 166 - 46대 166 - 47대 166 - 48대 166 - 49도	127.3 533.9 101.8 165.3 105.1 136.5 160.3 186.8 108.4 109.8 142.8 95.5 121.7 113.7 117.4 112.4 98.5 104.5 103.1 246.3 92.2 111.1 103.5 104.5 123.0 50.9		763.0 406.9 565.3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841.1	-						
					2	166 - 9대 166 - 10대 166 - 11대 166 - 38대 166 - 39대 166 - 12대 166 - 42대 166 - 43대 166 - 44대		199.0 117.4 103.5 115.7 143.5 182.5 196.0 196.0 182.5	679.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757.0		공동개발(권장)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GR - 3	2	166 - 13다	1,002.6	1,438.2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6 - 35다	172.2								
			166 - 36다	133.2								
			166 - 37다	130.2	399.0	공동개발(권장)						
			166 - 15다	182.8								
			166 - 41다	216.2								
			166 - 19다	1,086.3	1,602.7	-						
			166 - 16다	156.4								
			166 - 17다	312.4								
	166 - 40도	47.6										
	GR - 4	1	165 - 1다	186.4	783.1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5 - 2다	596.7	970.2	공동개발(권장)						
			165 - 3다	330.6								
			165 - 5다	380.5								
			165 - 6다	259.1	1,761.1	-						
			165 - 15다	138.8								
			165 - 16다	170.6								
			165 - 17다	246.0								
			165 - 18다	258.8								
			165 - 19다	149.1								
			165 - 20다	143.1								
			165 - 21도	77.0								
			165 - 22다	149.1								
			165 - 23다	147.1								
			165 - 24다	139.5								
			165 - 25다	142.5								
		2	165 - 9다	376.2	683.7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65 - 10다	133.6								
			165 - 35다	173.9								
			165 - 7다	333.3	3,264.1	-						
			165 - 8다	1,814.2								
			165 - 14다	224.1								
			165 - 28다	169.9								
			165 - 30도	49.6								
			165 - 31다	136.2								
			165 - 32다	147.4								
			165 - 33다	215.5								
			165 - 34다	173.9								
			GR - 5 GR - 6	1				29 - 56다	515.0	663.4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 - 57다	148.4	303.8	공동개발(권장)	
	29 - 58다	149.1										
	29 - 82다	154.7			377.8	공동개발(권장)						
	29 - 59다	224.1										
	29 - 81다	153.7										
	29 - 60다	226.1			364.3	공동개발(권장)						
	29 - 80다	138.2										
	29 - 61다	116.9			259.7	공동개발(권장)						
	29 - 79다	142.8										
	29 - 62다	233.1			373.6	공동개발(권장)						
	29 - 77다	140.5										
	29 - 78다	142.1			258.9	공동개발(권장)						
29 - 91다	116.8											
16다	508.4	3,923.5			-							
29 - 29다	168.9											
29 - 30다	253.2											
29 - 31다	125.0											
29 - 32다	246.9											
29 - 33다	242.0											
29 - 34다	230.1											
29 - 48다	133.6											
29 - 49다	132.9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GR - 5 GR - 6	1	29 - 50대	134.2	3,923.5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 - 51대	135.9				
			29 - 52대	134.5				
			29 - 53대	133.9				
			29 - 54대	226.8				
			29 - 55대	200.0				
			29 - 85도	560.2				
			29 - 89대	124.9				
			276 - 1도	232.1				
		2	29 - 63대	135.2	391.4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29 - 76대	256.2	534.2	공동개발(권장)		
			29 - 64대	137.5				
			29 - 65대	146.8	404.6	공동개발(권장)		
			29 - 75대	249.9				
			29 - 66대	154.7	349.1	공동개발(권장)		
			29 - 74대	249.9				
			29 - 67대	181.2	543.5	공동개발(권장)		
			29 - 73대	167.9				
			29 - 68대	187.8	538.9	공동개발(권장)		
			29 - 71대	147.4				
			29 - 72대	208.3	2,893.8	-		
			29 - 69대	153.1				
			29 - 70대	385.8				
			29 - 35대	128.0				
			29 - 36대	133.9				
			29 - 37대	135.9				
			29 - 38대	153.1				
			29 - 39대	134.5				
			29 - 40대	135.9				
			29 - 41대	171.2				
			29 - 42대	245.0				
			29 - 43대	285.6				
			29 - 44대	226.4				
			29 - 45대	119.9				
			29 - 46대	221.5				
			29 - 47대	136.2				
			29 - 85도	445.1				
			29 - 88대	119.8				
			29 - 90대	101.8				
	GR - 8	1	29 - 1대	5,348.8	46,266.5	특별계획구역	-	
			30 - 1대	40,414.5				
			276 - 23도	503.2				
	GR - 9	1	31 - 1대	162.6	534.5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 - 6대	371.9	454.2	공동개발(권장)		
			31 - 7대	227.8				
			31 - 8대	226.4	869.1	공동개발(권장)		
			31 - 9대	158.0				
			31 - 11대	165.3	1,259.0	-		
			31 - 36대	545.8				
			31 - 2대	232.7				
			31 - 3대	335.0				
			31 - 28대	133.6				
			31 - 29도	89.9				
31 - 30대			131.9					
31 - 31대			148.8					
31 - 32대			126.6					
31 - 34도			60.5					
2		31 - 10대	252.2	451.2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 - 19대	199.0	375.5	공동개발(권장)			
		31 - 20대	166.6					
		31 - 25대	208.9	335.5	공동개발(권장)			
		31 - 21대	166.9					
		31 - 24대	168.6					

구 분	가구번호	연 번	위 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GR - 9	2	31 - 22대	166.9	338.5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31 - 23대	171.6						
			31 - 37대	126.3						
			31 - 38대	398.7	666.2	공동개발(권장)				
			31 - 40대	141.2						
			31 - 12대	249.5						
			31 - 13대	161.3	2,329.2	-				
			31 - 14대	181.5						
			31 - 16대	181.5						
			31 - 17대	181.5						
			31 - 18대	194.7						
			31 - 26도	328.9						
			31 - 33대	148.1						
			31 - 39도	44.6						
			31 - 41대	163.6						
			31 - 42대	248.9						
			31 - 43대	245.1						
	GR - 23	1	24 - 11대	83.6	423.5	공동개발(지정)	공동 개발 (권장)	-		
			150 - 288대	17.0		공동개발(지정)				
			24 - 19대	172.6						
			152 - 1대	23.0		-				
			24 - 10대	127.3						
		2	150 - 104대	324.0	430.4	공동개발(권장)		-		
			150 - 290대	106.4						
		3	150 - 106대	221.0	442.0	공동개발(권장)				
			150 - 107대	221.0						
		GR - 24	1	28 - 3대	285.8	515.4	공동개발(권장)		-	
	28 - 26대	229.6								
	GR - 25	1	21 - 1대	230.7	461.8	공동개발(권장)		-		
			21 - 2대	231.1						
	GR - 26	1	23 - 1대	181.8	366.9	공동개발(권장)		-		
			23 - 2대	185.1						
	GR - 32	1	18 - 22대	205.6	581.5	공동개발(권장)		-		
			18 - 55대	175.2						
			18 - 65대	200.7						
		2	18 - 26대	168.9	848.2	공동개발(권장)		-		
			18 - 54대	255.2						
			18 - 61대	168.9						
			18 - 62대	255.2						
		3	18 - 27대	387.1	971.9	공동개발(권장)		-		
			18 - 56대	584.8						
18 - 28대			255.2							
18 - 29대			99.2	439.9		공동개발(권장)			-	
18 - 146대			85.5							
4		18 - 144대	99.0	529.5	공동개발(권장)		-			
		18 - 145대	430.5							
GR - 33	1	18 - 24대	14,779.4	14,779.4	-		-			
GR - 34	1	18 - 1대	287.6	520.0	공동개발(권장)		-			
		18 - 3대	232.4							
GR - 36	1	297 - 14대	140.5	317.0	공동개발(권장)		-			
		297 - 15대	176.5							

※ 조서에 표기되지 않은 필지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조 자율적 공동개발 적용 원칙에 따라 단독개발 및 공동개발이 가능함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불허용도	비고
기정		공통사항	• 운동시설 중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관련시설	-
	A	준주거지역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B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준주거지역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숙박시설 (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외)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개별건축시
	C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 주거복합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
변경	D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C→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 주거복합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

2) 건축물의 권장 및 허용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권장용도	비고
기정	A	준주거지역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B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준주거지역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C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독서실	-
	D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변경	D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제외 권장용도 D → 허용용도 A

※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권장용도에서 제외

■ 허용용도 결정(신설)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허용용도	비고
신설	A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허용용도 신설

3) 건축물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기정	준주거지역	60% 이하	-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정	A	준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기정	B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90% 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능동로변 개별건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200% 이하	330%이하	400%이하 (480%이하)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정	C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배후주거지역
변경	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70%이하	190%이하	250%이하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용적률D는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내용(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이내
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alpha \text{토지}$ =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공공시설(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을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 개정시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변경)

구 분				유 형 1 (일반주거지역)	유 형 2 (특별계획구역)	비 고
규 제 형 (50% 이내)	획 지 계 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	-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1.0	-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0.25, 개방형 α=0.4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1.0, 개방형 α=1.2	-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
유 도 형 (30% 이상)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0.3, 개방형 α=0.5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1.2, 개방형 α=1.5	-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0.3, 개방형 α=0.5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1.2, 개방형 α=1.5	-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0.5, 개방형 α=0.8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형 α=1.5, 개방형 α=2.0	-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설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3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1.0	-
		특정층 개방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 × 1.0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도시 경관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	기준용적률 × 0.2	-
의 무 형 (20% 이상)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 보 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3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2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1	-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0.02이 상

구 분			유 형 1 (일반주거지역)	유 형 2 (특별계획구역)	비 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 × 0.05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

- ※ 의무형 인센티브 친환경 계획 항목은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 ※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 ※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단,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 조정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 의무형 인센티브는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 ※ 특정층 개방이라 함은 1층, 옥상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 가능한 지하층, 2층이상의 옥외공간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유형 2를 적용하여 인센티브 산정함

■ 유형3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허용용적률 항목 적용

구 분	유 형 3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9%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3%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20% 이하 15% 초과	15% 이하 10% 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4등급
			6%

구 분	유 형 3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합계	최대 20%이내	

※ 유형1,2 변경없음, 유형3(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신설

■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용 도 지 역	높 이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 정	A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4m	배후주거지
	B		-	30m	용마산로변
	C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준주거지역	-	60m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60m	90m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E	준주거지역	80m	100m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변 경	F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최고 40m (최고12층)이하 평균10층 이하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높이계획F는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층수계획 기준 적용

※ 최고높이 기준 : 1층의 바닥 지표면 기준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항 목	적용대상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건 축 한계선	능동로	능동로변 인접 대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화양변전소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용마산로	용마산로변 인접 대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면목로	면목로변 인접대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면도로	배후주거지역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제외
			용마산로33길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국립서울병원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5.0m	
		화양변전소	능동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능동로53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2.0m	
신 설	건 축 한계선	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용마산로 24길로 부터 4.0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2)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변경)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개방형시설	획지1(도면에 표시)	• 용마산로 24길 및 학교변에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학교통학로 조성	개방형시설	• 공공기여 - 학교 통학 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등을 대상지 내 계획
근린생활시설	획지1(도면에 표시)	• 용마산로 24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층수/높이	획지1(도면에 표시)	건축물의 높이는 용곡초등학교 운동장레벨(+68.5m)이하로 계획하되, 통경축 확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2호 조합 3개동 이하 12층까지 계획 가능

■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입체적 통경	획지1(도면에 표시)	- 용마산로변에서 용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입체적 통경구간 설정하여 용마산 경관 공유 - 입체적 통경구간은 가급적 건축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배치시, 용곡 초등학교 운동장 레벨(+68.5m)이하로만 가능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가로보행 환경제고 - 일체적 보행공간 확보 및 조성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보도 연결형 - 도로 연결형 - 공원 녹지형
공개공지	- 가로보행 환경개선 - 가로변 및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가로변 연결형 공지 형태로 조성위치 지정
쌈지형공지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 미대상 필지
침상형공지	지하철역과 연계한 역세권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지하철과 연계 가능한 필지 - 중곡역 주변필지
공원 및 공공공지	휴게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부지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목 표	가이드라인(권장사항)
주요가로변 및 역세권 (능동로변, 용마산로변, 중곡역일대)	• 창조적 디자인 유도	• 각각부 건축물은 역세권의 랜드마크로서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
	•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층부에 야외카페 조성, 개방적 입면 계획 등 유도
	• 옥외광고물 개선	•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건축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관에 기여하는 요소가 되도록 함
	• 부속시설물의 시각적 차폐	• 에어컨실외기 등의 건물 부속물은 건축계획시 건물디자인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휴먼스케일 고려 및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	• 2층 높이(6m)로 저층부 높이를 제한하여 휴먼스케일을 고려하고, 중·고층부는 3m 셋백(setback)하여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
	• 고층부 후퇴공간에 녹화 유도	• 고층부의 셋백(setback) 공간에는 녹화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광진구의 중심 가로로서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
	• 획일적인 건물외관 지양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분절화에 의한 표정이 풍부한 건물 외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 사용	• 재료가 갖는 질감과 물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장재를 쓰도록 하며, 재료 간의 색채 및 패턴의 조화를 고려함 (광택이 강하거나 반사성 재질은 제한적으로 사용)

3) 교통처리계획(변경)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보행자 우선도로	• 대상구역내 통학로 및 주요 보행지역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 • 보행의 안전, 쾌적성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요 간선도로변 (능동로변, 용마산로변) • 용마산로 24길(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간선부 차량진출입을 최소화하여 교통흐름 원활 유도 • 이면부 차량진출입 유도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간선가로변 공동개발 권장사항 필지	•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 최소화 유도
공동주차 출입구	• 이면부의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	• 간선가로변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및 보행안전성 증진
공공 보행도로	• 화양변전소 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 대규모 개발시 주변과 연계계획 필요에 따라 설치	• 주요시설 및 대형건축물과의 보행연계 및 보행동선 단축
보통차 혼용도로	• 대규모 개발시 주변과 연계계획 필요에 따라 설치	• 이면도로의 원활한 보행 및 교통동선 유도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도로 개설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보행등선	-	- 남측 보행출입구는 용마산로 22길과 위치를 맞춰서 연결 ※ 보행출입구에 건축물 배치 지양

■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결정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차량출입불허구간	- 주요 간선도로변 (능동로변, 용마산로변) - 용마산로 24길(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신항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비상차량출입구 외 차량출입 불허
주차출입구	6개소	- 용마산로24길 추라(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 신항빌라 내 차량(지하주차장)출입 위한 주차출입구 추가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보행등선	-	- 남측 보행출입구는 용마산로 22길과 위치를 맞춰서 연결 ※ 보행출입구에 건축물 배치 지양

4)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 생태면적율	30% 이상	○	• 주택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일부 수목훼손이 예상됨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대상지 내 주택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음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3.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4. 비오름 및 동식물상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름 평가제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생활 환경	5. 일조	-	-	• 대상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북 측: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서울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설계기준 반영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8.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 건물배치 계획변화에 따라 경관변화 예상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계획 수립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옥상녹화,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상지 단절되는 보행로 없음	• 보행공간 확충으로 가로흐름 연속성 부여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자전거보관소	○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검토 필요	
추가	11.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광진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12.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마.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합 계	305	100.0	15	-	15	4.9	-	100.0
60㎡이하	178	58.4	15	-	15	4.9	-	100.0
60㎡초과~ 85㎡이하	75	24.6	-	-	-	-	-	-
85㎡초과	52	17.0	-	-	-	-	-	-

2)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 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㉑	특별계획구역 ㉑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46,266.5	-	46,266.5	
기정	㉒	특별계획구역 ㉒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68-2	9,497.2	-	9,497.2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광진구 중곡동 167-1 일대	3,086.3	-	3,086.3	GR-2
기정	②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광진구 중곡동 166-1 일대	3,576.3	-	3,576.3	GR-3
기정	③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광진구 중곡동 166-9 일대	4,876.0	-	4,876.0	GR-3
기정	④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광진구 중곡동 165-1 일대	3,514.9	-	3,514.9	GR-4
기정	⑤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광진구 중곡동 165-7 일대	3,947.8	-	3,947.8	GR-4
기정	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⑥	광진구 중곡동 16 일대	6,525.0	-	6,525.0	GR-5,6
기정	⑦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⑦	광진구 중곡동 29-35 일대	5,655.5	-	5,655.5	GR-5,6
기정	⑧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⑧	광진구 중곡동 31-1 일대	3,116.8	-	3,116.8	GR-9
기정	⑨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⑨	광진구 중곡동 31-12 일대	4,496.1	-	4,496.1	GR-9

□ 2022년 제2차('2022.2.10.')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구 분	자 문 의 건	반 영 계 획	비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대상지 단차에 따른 옹벽 조성시 안전성 및 주변 세대의 거주환경 제고 방안 검토	• 건축계획시 옹벽에 따른 안전성 및 거주환경을 고려하겠음	
	• 신축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세대수 제한(300세대 이상) 필요성 재검토	• 특별건축구역 운영가이드라인(21.11.3.)제13조에 따라 공동주택 특례사항 적용 건축물이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 300세대 이상 항목 삭제	
	• 건축물 높이제한은 40m이하로 조정 검토	• 건축물 높이제한 40m이하로 조정함	
	• 다양한 지점에서 근경/중경/원경 경관시뮬레이션 추가 검토 필요	• 경관시뮬레이션 추가 하였음	
	• 건축물 배치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12층 허용구간 구체적 명시	• 신축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층수 12층 허용구간을 명시 하였음	
	• 구체적 건축계획시 판상형 주동의 입면 색채 및 형태 조정 등을 통한 차폐감 완화 방안 검토	• 건축계획시 차폐감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엘리베이터 수요 및 이용자 특성 고려하여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위치 검토	• 건축계획시 엘리베이터 수요 고려하여 고층 커뮤니티시설 축소 및 진입 레벨에 설치하는 커뮤니티시설 확대 하겠음	
	• 지하주차장 계획시 차량 동선을 고려한 램프 위치의 적정성 검토	• 건축계획시 차량동선을 고려한 지하주차장계획하겠음	
	• 대상지 주변 횡단보도 및 교통체계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검토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국립서울병원)건립에 따라 조성된 현황 횡단보도 및 교통체계 유지하였음	

□ 2022년 제1차('2022.3.7.')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 의 결 과	심 의 의 건	반 영 계 획	비고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수정가결 (수정사항)	• 용적률 : 기준 170%, 허용 - , 상한 184%, 법적상한 200%	• 기준용적률 170%이하 / 허용용적률 170% / 상한용적률 184%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200%이하로 변경하였음	
		• 공공기여 인센티브 면적 : 788㎡(5%) → 978.4㎡(6.2%)	• 공공기여 인센티브 면적 978.4㎡로 변경하였음	
		• 높이계획 최고40m(최고12층)이하, 평균층수 10층이하	• 높이계획 최고40m(최고12층)이하, 평균층수 10층이하로 반영하였음	
		• 세대수 전체 305세대(소형임대 15세대 포함)	• 소형임대 15세대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 305세대로 반영하였음 - 임대주택 : 46㎡·4세대, 59㎡·11세대	
	수정가결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 검토 - 주민공람(안)의 허용용적률계획(녹색건축인증 6%, 지능형건축물 6%)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통경계획이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테라스하우스 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 조정 검토 필요 - 대상지 동측 도로계획 관련 학교로 연계되는 현황 계단 경사도 조정 가능성(계단 참 계획 등)등을 검토할 것	• 건축위원회 심의 시 '21.11.주민공람(안) 허용용적률계획(녹색건축인증 6%, 지능형건축물 6%)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경측 고려한 테라스하우스 배치, 스카이라인계획 조정검토 하겠음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학교와 연계되는 현황 계단 경사도 조정 검토하겠음	
		• 차량진출입구계획은 대상지 남측 도로변 1개소임을 명확히 하고, 테라스하우스 등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차량진출입구는 용마산로24길 1개소이며, 구체적 건축계획 시 비상차량 테라스하우스, 공동주택 각 세대로 접근 가능토록 계획하겠음	
		• 사업시행인가 전 통학로와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운영주체를 결정할 것	• 사업시행인가 전 엘리베이터 및 브릿지 운영주체 결정하겠음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5. 종합지침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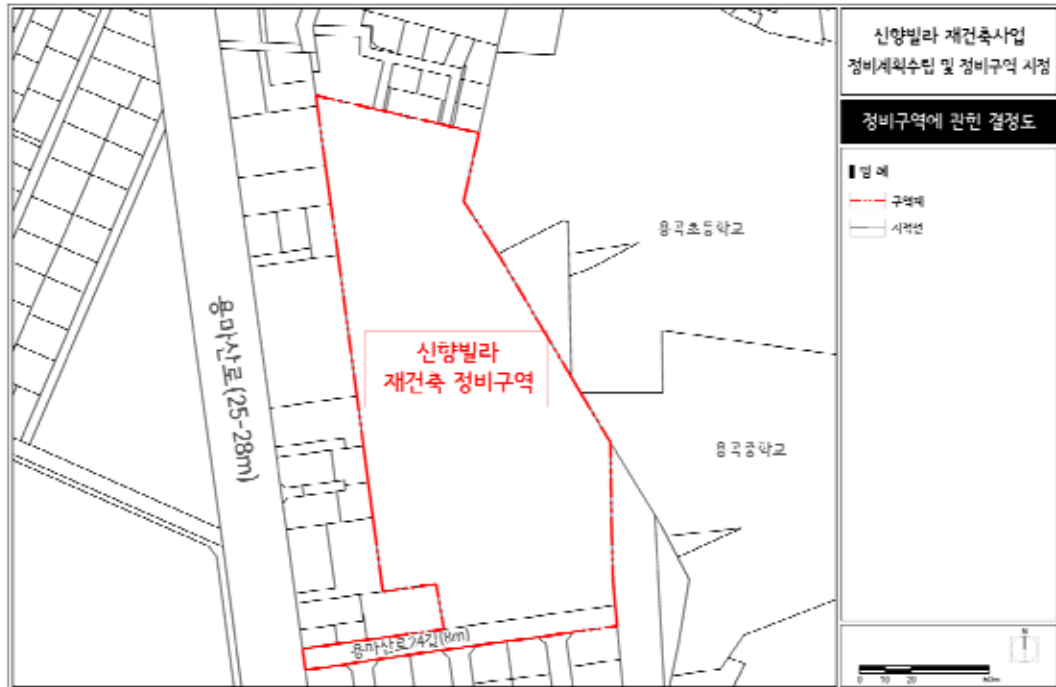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1), 광진구 주택과(☎02-450-7697)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 정비구역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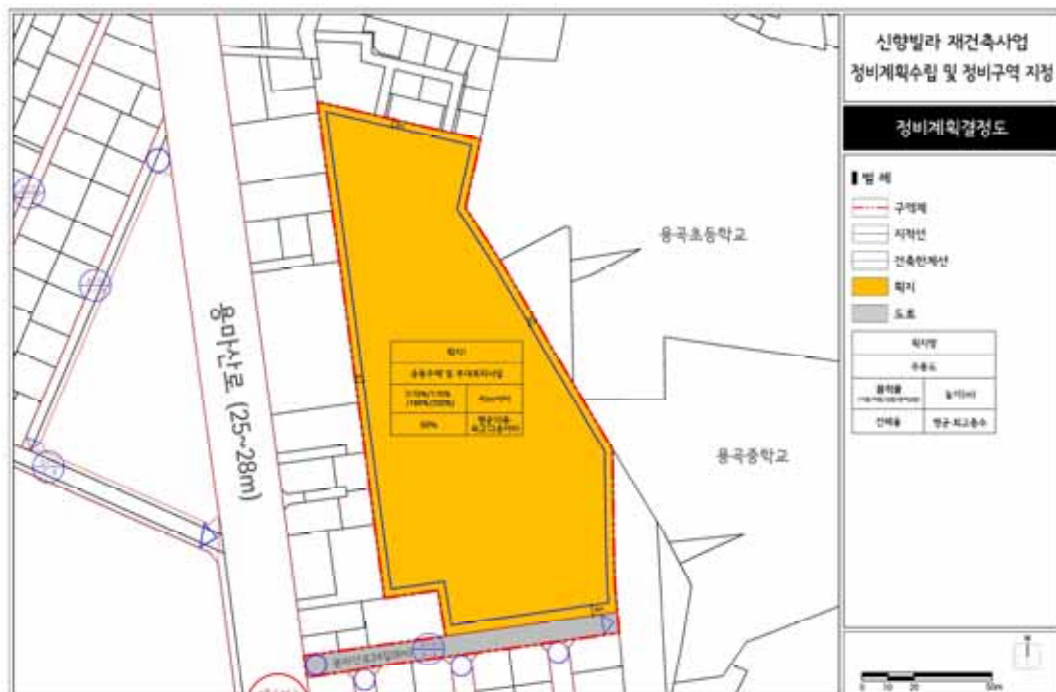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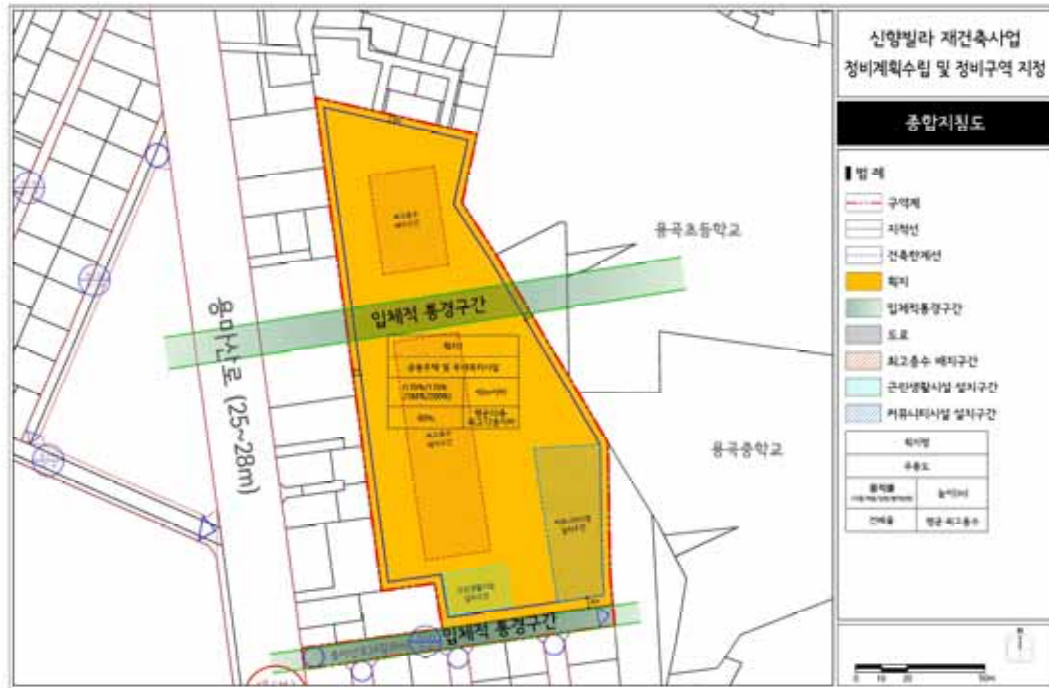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결정도(신설)



☐ 종합지침도(신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1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준치지역)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2호(201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2호(2014.1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호(2016.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4호(2016.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2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5호(2016.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2017.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1호(2020.06.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8호(2020.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4호(2021.0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6호(2022.04.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	908,141.9	감)7,780.3	900,361.6	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과 중복결정된 구역 제척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27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서북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 안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자연친화형도시”, 지구내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문화도시”,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간친화형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녹색문화타운」을 목표로 함

라. 재정비촉진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08,141.9	감)7,780.3	900,361.6	100.0	
주거 용지	소 계	535,751.6	감)739.7	535,011.9	59.5	
	단독주택	5,569.0	-	5,569.0	0.6	
	공동주택	473,754.5	-	473,754.5	52.6	
	공공임대주택(기숙사)	8,840.0	-	8,840.0	1.0	
	근린생활시설	6,076.7	-	6,076.7	0.7	
	종교시설	40,432.9	감)739.7	39,693.2	4.5	
	유 보 지	1,078.5	-	1,078.5	0.1	
상업/업무		54,783.9	감)5,277.5	49,506.40	5.4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317,606.4	감)1,763.1	315,843.3	35.1	
	공공청사	12,154.6	-	12,154.6	1.3	
	문화/복지시설	5,244.1	-	5,244.1	0.6	
	체육시설	2,300.0	-	2,300.0	0.3	
	학교시설	86,570.4	-	86,570.4	9.6	
	공 원	53,520.6	-	53,520.6	6.0	
	녹 지	16,164.9	-	16,164.9	1.8	
	공공공지	4,838.9	감)443.0	4,395.9	0.5	
	도 로	128,283.9	감)1,320.1	126,963.8	14.1	
	철 도	8,392.2	-	8,392.2	0.9	
	광 장	136.8	-	136.8	0.0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Ⅲ-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Ⅲ-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구 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	908,141.9	감)7,780.3	900,361.6	-	-
촉진구역(3개구역)	-	640,064.7	-	640,064.7	-	-
1구역	-	244,806.8	-	244,806.8	-	-
1-1구역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	77,825.5	-	77,825.5	주택재개발	-
1-2구역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60,335.5	-	60,335.5	주택재개발	-
1-3구역	북아현동 158-1번지 일대	106,645.8	-	106,645.8	주택재개발	-
2구역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122,776.1	-	122,776.1	주택재개발	-
3구역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272,481.8	-	272,481.8	주택재개발	-
준치지역	-	268,077.2	감)7,780.3	260,296.9	-	-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소 계	-	감)6,244.0	42,687.7	-	-
	북아현지구단위 계획구역	북아현동220번지 일대	-	24,714.0	-	-
	아현지구단위 계획구역	북아현동998번지 일대	-	17,973.7	-	-
	마포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북아현동886번지 일대	감)6,244.0	-	-	-
준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219,145.5 주1)(223,134.2)	감)1,536.3	217,609.2 주1)(222,597.9)	-	-
	KT,아현성결교회	북아현동35-1대 일대	감)420.3	16,054.7	-	-
	한성중교교	북아현동170-1번지일대	-	28,679.2 주1)(28,689.5)	-	-
	북 성 초 교	북아현동215번지 일대	-	16,007.5	-	-
	두 산 A P T	북아현동 1009대	-	22,704.0	-	-
	충정로2가 190-10일원	충정로2가 190-10번지일대	-	8,813.0	-	-
	경 기 대	충정로2가 68-9번지일대	-	14,744.8 주1)(17,779.5)	-	-
	인창중교교	충정로2가 70-2번지일대	-	14,463.0 주1)(15,406.7)	-	-

구 분		위 치	면적(m ²)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충정로2가 55일원	충정로2가55번지 일대	8,032.0	-	8,032.0	-	-
	충정·냉천주택재개발	냉천동	16,038.0	-	16,038.0	-	-
	충정로3가 3-73일원	충정로3가 3-73번지일대	500.0	-	500.0	-	-
	경 의 선	북아현동 118-96번지일대	12,693.2	-	12,693.2	-	-
	북 성 교 회	북아현동 229-27번지	1,646.0	-	1,646.0	-	-
	기 타	-	58,349.8	감)1,116.0	57,233.8	-	-

주1) 「존치시설 및 건축물」의 괄호내 면적은 북아현1-3구역내 한성중고교(10.3㎡), 북아현3구역내 경기대(3,034.7㎡), 인창중고교(883.8㎡) 포함면적임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기타 계획(변경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Ⅲ-17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Ⅲ-18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Ⅲ-19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북아현 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북아현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다) 북아현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라) 북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마) 북아현 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바) 북아현 3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	908,141.9	감)7,780.3	900,361.6	최초결정일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서대문구 북아현동일원	지구내 면적 변경 - 908,141.9㎡ → 900,361.6㎡	계획의 정합성을 위하여 마포로4구역과 중복결정되어있는 지구 제척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m)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 지역	계		908,141.9	감)7,780.3	900,361.6	100.0	-
	일 반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0.9	-	11,250.9	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63,366.6	-	163,366.6	18.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625,833.4	감)1,589.6	624,243.8	69.3	-
		제3종일반주거지역	40,472.7	감)15.5	40,457.2	4.5	-
	준주거지역		58,064.3	감)6,175.2	51,889.1	5.8	-
근린상업지역			9,154.0	-	9,154.0	1.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북아현동 806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준주거지역	1,589.6	-	지구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충정로3가동 96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5	-	지구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175.2	-	지구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1) 미관지구(변경없음)

(2) 방화지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	서대문~마포	85,752㎡ (14,200㎡)	-	85,752㎡ (12,014㎡)	건고제727호 (63.12.13)	

주) ()는 촉진지구내 수치임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서대문~마포	• 지구내 면적 변경 14,200㎡→12,014㎡(감2,186㎡)	• 지구제척에 따른 지구내 면적 감소

(3) 경관지구(변경없음)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주1)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현동 37번지 일대	24,714	-	24,714	
기정	3	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17,973.7	-	17,973.7	

주1) 북아현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역명(신촌→북아현)은 서고제338호(' 20.8.13)으로 적용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 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9	9,305	140,991	8	4,222	84,815	7	880	12,280	24	4,203	43,896
대로	-	-	-	-	-	-	-	-	-	-	-	-
중로	22	8,072	133,441	7	4,115	83,745	2	718	10,803	13	3,239	38,893
소로	17	1,233	7,550	1	107	1,070	5	162	1,477	11	964	5,00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42	12	집산 도로	1,700 (909)	현저동	아현동	일반 도로		건고제177호 (62.12.8)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160	충정로2가 113-2	충정로2가 102-2	일반 도로		총고제722호 (36.3.26)	지구외 (충정로진입부)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9	냉천동 74-230	냉천동 78-45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57	냉천동 78-45	냉천동 20-4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7	냉천동 74-51	냉천동 74-230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구분	규 모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기 점	중 점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117	충정로2가 65-26	충정로2가 67-133	일반 도로		서고제155호 (03.6.16)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105	충정로2가 73	충정로2가 65-5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04	북아현동 산1-445	북아현동 1-17	일반 도로		서고제71호 (03.6.18)	일부지역 B : 10m, L : 204m 축진지구편입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65	북아현동 221-16	북아현동 160-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982	북아현동 138-24	북아현동 187-18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

(표 계속)

구분	규 모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기 점	중 점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북아현동 251-70	북아현동 산1-241	일반 도로		충고제903호 (39.11.18)	시점부폭원 (25M) /일부지역 B : 4m, L : 420m 축진지구 편입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58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979	충정로2가 69-6	북아현동 1-45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14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44	북아현동 240-2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61	북아현동 221-2	북아현동 240-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87	북아현동 153-25	북아현동 220-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33	북아현동 135-4	북아현동 13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323	북아현동 826	북아현동 126-2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6)	12	집산 도로	323 (251)	북아현동 826	북아현동 126-2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3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8)	12	국지 도로	42	북아현동 1-48	북아현동 1-4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254	북아현동 176-87	북아현동 176-1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중 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7	북아현동 238-22	북아현동 238-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3	북아현동 220-32	북아현동 220-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3	북아현동 156-28	북아현동 156-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10)	12	국지 도로	140	북아현동 1-94	북아현동 1-60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8)	8	특수 도로	36	북아현동 134-21	북아현동 134-8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21	북아현동 251-45	북아현동 251-28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A)	4	일반 도로	20	북아현동 251-28	북아현동 251-1	일반 도로		서고제338호 (20.8.13)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31	북아현동 216-43	북아현동 209-20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20	충정로3가 1-35	충정로3가 1-27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999-1 (중로3-6호선)	북아현동 975-1 (중로3-6호선)	보행자우 선 도로	북아현동	서고제260호 (00.9.19)	

(표 계속)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중 점				
기정	중로	1	(7)	20	국지 도로	17	북아현동 (중·집)1-(2))	북아현동 170-1	일반 도로	-	서고제382호 (11.12.15)	한성중·고교 진출입로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91	북아현동 (중·집)1-(1))	북아현동 215-95	일반 도로		서고제246호 (12.9.13)	북성교육문화원 주차장진출입로
기정	소로	2	(11)	10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608	일반 도로		서고제231호 (20.6.4)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6	북아현동 (중·집)1-(4))	북아현동 124-20	일반 도로		서고제231호 (20.6.4)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42	북아현동 (중·집)1-(3))	북아현동 118-34	일반 도로		서고제231호 (20.6.4)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46	북아현동 (중·집)2-(2))	냉천동 261	일반 도로		서고제186호 (22.4.21)	신일교회 진출입로

주)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6	중로3-6	- 지구내 연장 변경 - L : 323 → 323(251)m (감 72m)	지구제척에 따른 구역내 연장 변경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북아현동 215	2,482.62	-	2,482.62	서고제3호 (05.1.6)	복성 초교내
기정	6	주차장	충정로3가 3-11일대	1,500	-	1,500	서고제186호 (22.4.21)	공공청사⑦과중복결 정

다) 철 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아현동 정차장	도시 철도	경기공전앞			230	3,985.6 (258.4)	건고232호 (77.12.1)	아현역 - 소공원⑦78.4㎡중복결정
기정	2	경의선	도시 철도	서울	도라산		55,700 (1,100)	-		녹지(2,829㎡), 열공급설비(423㎡), 북주산공원(12,357.8㎡)과 중복결정

주) 연장 및 면적내 ()는 재정비축진지구내 수치임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 원

○ 총괄표

구 분	시가화구역	
	개소	면적(㎡)
합 계	8	53,520.6
주1)도시자연공원	-	-
근린공원	1	31,117.8
어린이공원	4	9,463.2
소공원	3	12,939.6
문화공원	-	-

주1) 안산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등)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변경(해제)하였으며, 일부는 안산근린공원
(262,192.8㎡)으로 변경결정되고, 그외지역은 공원해제 후 안산도시자연공원구역(1,671,570.7㎡)으로 결정됨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북아현3	어린이 공원	북아현2동 210-24외 6필지	2,269.0	-	2,269.0	총고제208호 (40.3.12)	
기정	4	안산 자연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일대	262,192.8 (-)	-	262,192.8 (-)	총고제208호 (40.3.12)	지구외
기정	5	금화공원	소공원	냉천동일대	7,322.2	-	7,322.2	서고제38호 (08.2.5)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기정	7	굴레방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62.7	-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 (78.4㎡)와 중복결정
기정	9	북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31,117.8	-	31,117.8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철도 (12,357.8㎡)와 중복결정(구역내 28,012.9㎡, 구역외 3,104.9㎡), 열공급설비와 중복결정(구역내 3,655.9㎡,구역외 423㎡)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3	북아현6	소공원	북아현동 548일대	5,054.7	-	5,054.7	서고제231호 (20.6.4)	

주)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북아현동 1-1394일대	7,556.8	-	7,556.8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 철도(604.0㎡)와 중복결정
기정	3	녹지	연결 녹지	북아현동 176-221일대	3,182.9	-	3,182.9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 철도(1,862.0㎡)와 중복결정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북아현동 149-26일대	896.3	-	896.3	서고제382호 (11.12.15)	-
기정	6	녹지	연결 녹지	북아현동 1-835일대	2,424.3	-	2,424.3	서고제31호 (13.2.7)	-
기정	7	녹지	연결 녹지	북아현동 1-1540일대	2,104.6	-	2,104.6	서고제31호 (13.2.7)	경의선 철도(363.0㎡)와 중복결정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공공공지	대현동 65-12일대	1,203.0	-	1,203.0	서고제38호 (08.2.5)	
기정	11	공공공지	북아현동 148-26일대	1,549.3	-	1,549.3	서고제38호 (08.2.5)	
폐지	13	공공공지	북아현동 915일대	443.0	감)443.0	-	서고제38호 (08.2.5)	
기정	16	공공공지	북아현동 220-11외3필지	207.1	-	207.1	서고제38호 (08.2.5)	
기정	17	공공공지	북아현동 251-89외3필지	538.3	-	538.3	서고제38호 (08.2.5)	
기정	18	공공공지	북아현동 189-41일대	865.2	-	865.2	서고제38호 (08.2.5)	

주)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공공공지	- 폐지 - 감) A=443.0㎡	지구제척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이전으로 환원

라) 광 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1	일반광장	북아현동 163-30일대	136.8	-	136.8	서고제246호 (12.9.13)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열공급 설비	북아현동 171-6 일대	4,078.9	-	4,078.9	서고제38호 (08.2.5)	북주산공원(4,078.9㎡) 및 경의선철도(423㎡)와 중복결정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 청사	소방 파출소	북아현동 144-19 일대	-	1,671.9	-	1,671.9	서고 제38호 (08.2.5)	북아현 소방파출소
기정	5	공공 청사	-	북아현동 1-106외 12필지	북아현동 3-372 일대	2,577.0	-	2,577.0	서고 제38호 (08.2.5)	북아현 제3동 동사무소 (북아현3동 커뮤니티센터 복합화)
기정	6	공공 청사	복합 청사	북아현동 129-37일대	-	3,498.7	-	3,498.7	서고 제231호 (20.6.4)	서대문구 기부채납
기정	7	공공 청사	-	-	충정로3가 3-11 일대	1,500.0	-	1,500.0	서고제186호 (22.4.21)	공영주차장⑥과 중복결정
기정	8	공공 청사	-	-	북아현동 1-277 일대	2,407.0	-	2,407.0	서고제186호 (22.4.21)	서울시 자유시민대학, 주거복지센터
기정	9	공공 청사	-	-	충정로3가 3-12일대	500.0	-	500.0	서고제186호 (22.4.21)	지구대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③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⑤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개별법에 따름
⑦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개별법에 따름
⑧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개별법에 따름
⑨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개별법에 따름

나)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215	16,007.5	-	16,007.5	서고제360호 (64.7.8)	복성
기정	2	학교	중고등학교	북아현동 170-1	28,689.5	-	28,689.5	서고제360호 (64.7.8)	한성
기정	3	학교	중고등학교	충정로2가 70	15,346.8	-	15,346.8	서고제192호 (73.12.10)	인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학교	대학교	충정로2가 67-3일대	17,779.5	-	17,779.5	서고제270호 (94.8.11)	경기대
기정	5	학교	대학교	북아현동 190-1일대	45,720.0 (0)	-	45,720.0 (0)	서고제396호 (01.11.29)	추계예술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북아현동 544일대	9,070.1	-	9,070.1	서고제38호 (08.2.5)	

주) 학교시설⑥은 북아현2구역 준공시기 도래 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귀속 함
주) ()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②	30	120	5	-	8·15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현지구에 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⑥	30	200	5	-	-

다) 문화시설(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문화 시설	타운센터 (전시·공연등)	북아현동 176-233일대	1,703.9	-	1,703.9	서고제38호 (08.2.5)	
기정	2	문화 시설	-	북아현동 1-99일대	2,493.0	-	2,493.0	서고제186호 (22.4.21)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①	문화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②	문화시설	60% 이하	200% 이하	개별법에 따름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북아현동 215-1	715.1	-	715.1	서고제38호 (08.2.5)	북아현2동 커뮤니티센터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북아현동 251-99번지 일원	332.1	-	332.1	서고제338호 (20.8.13)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라) 도서관(해당없음)

마) 체육시설(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체육 시설	공공·체육시설	북아현동 3-360일대	2,300	-	2,300	서고제186호 (22.4.21)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체육시설	60% 이하	200% 이하	개별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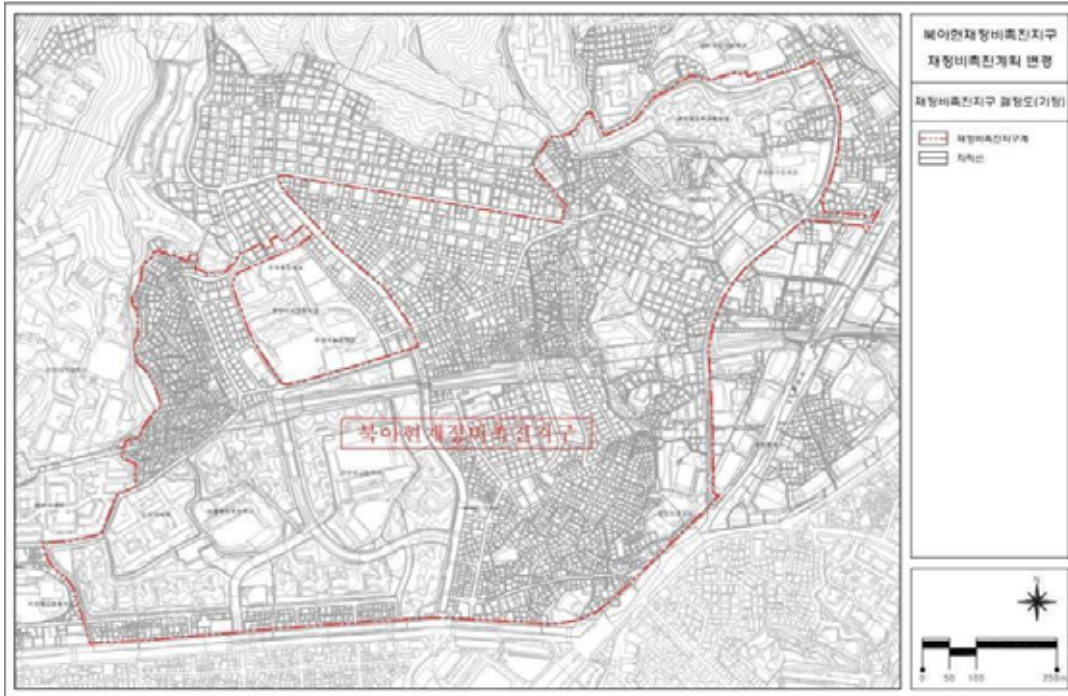
마.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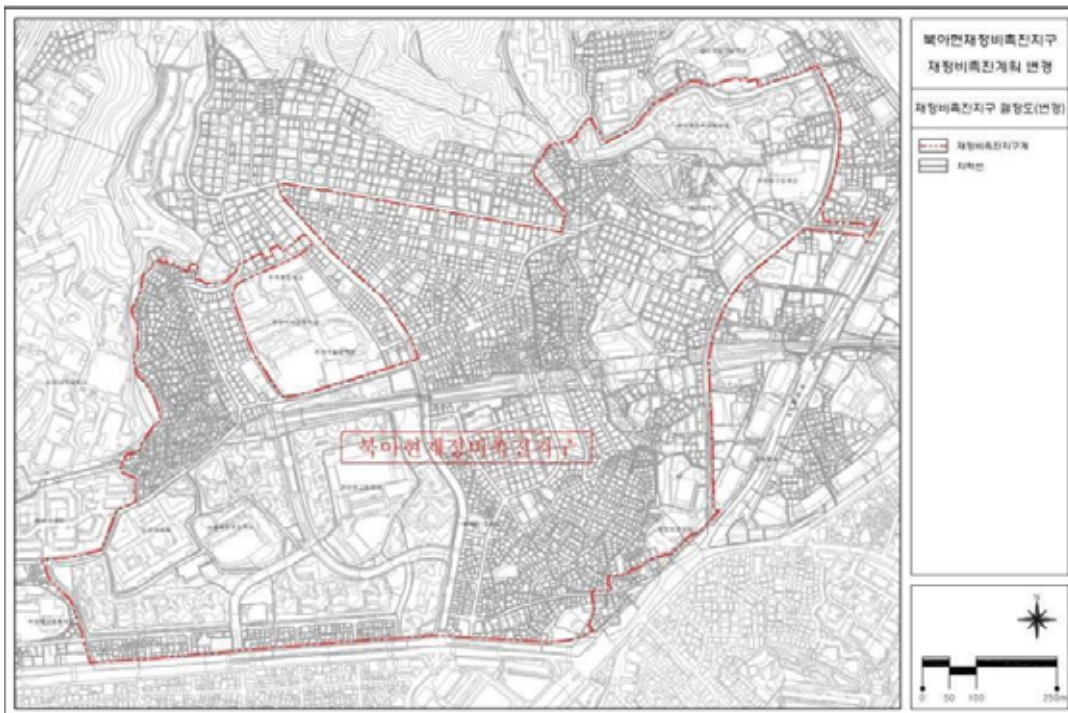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4) 및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02-360-164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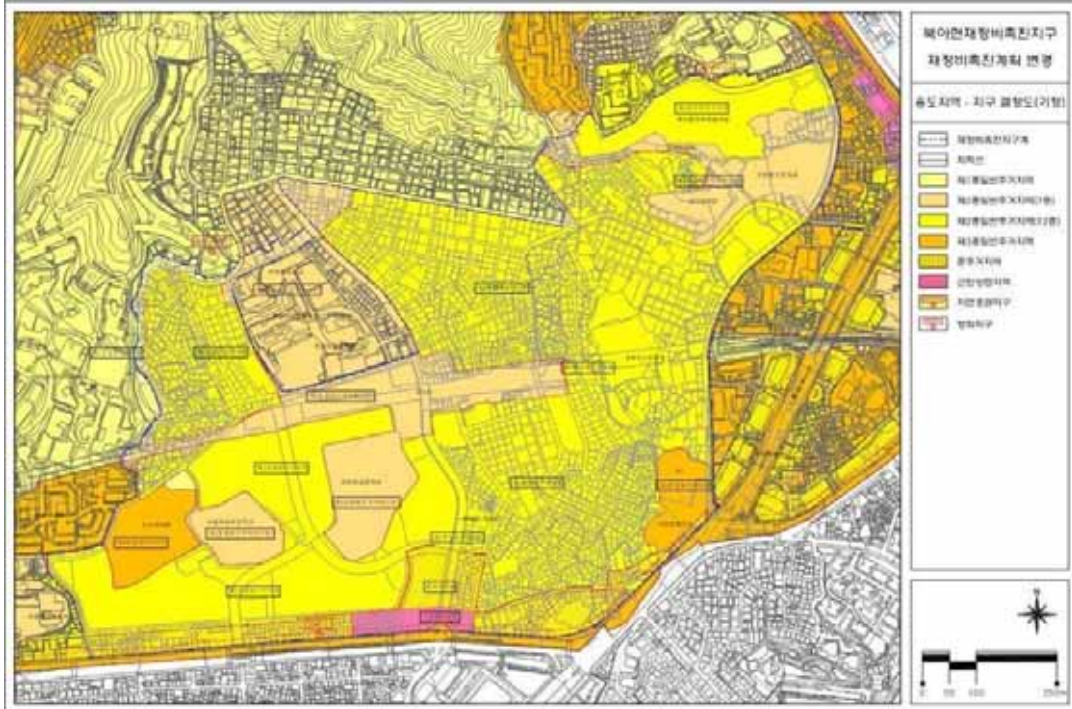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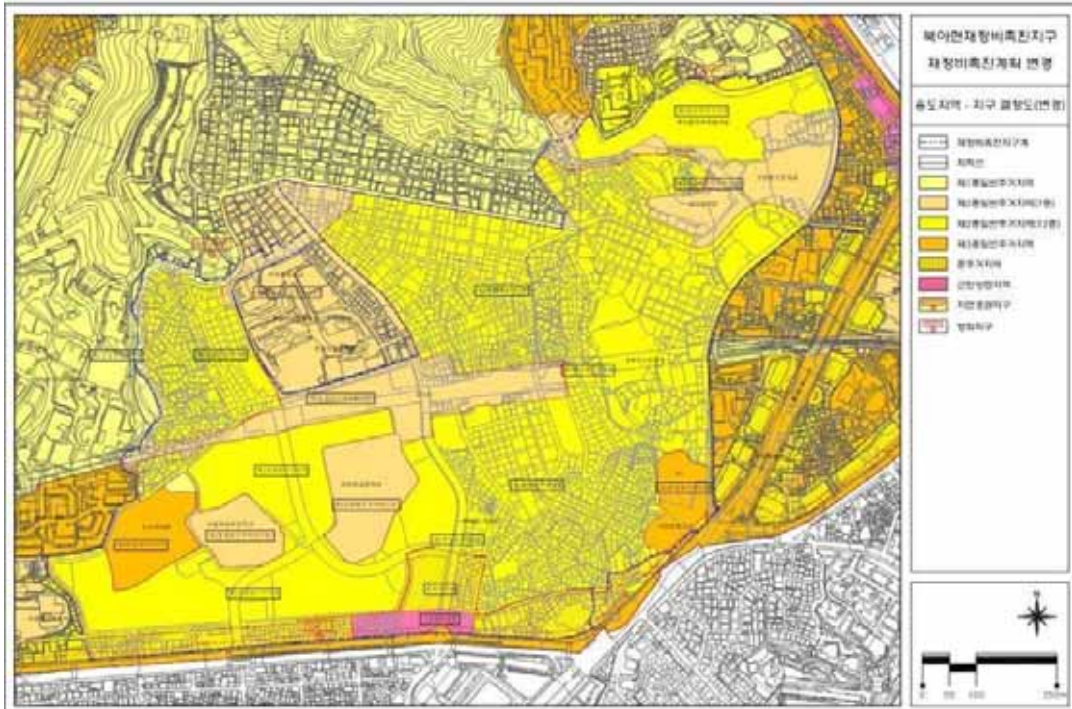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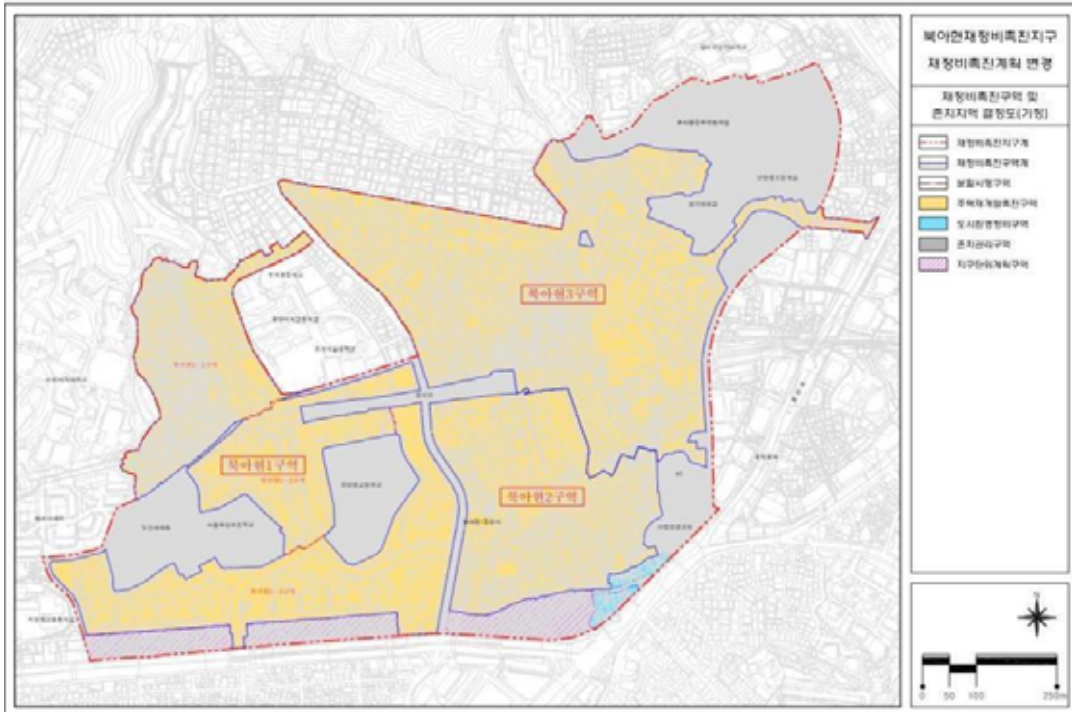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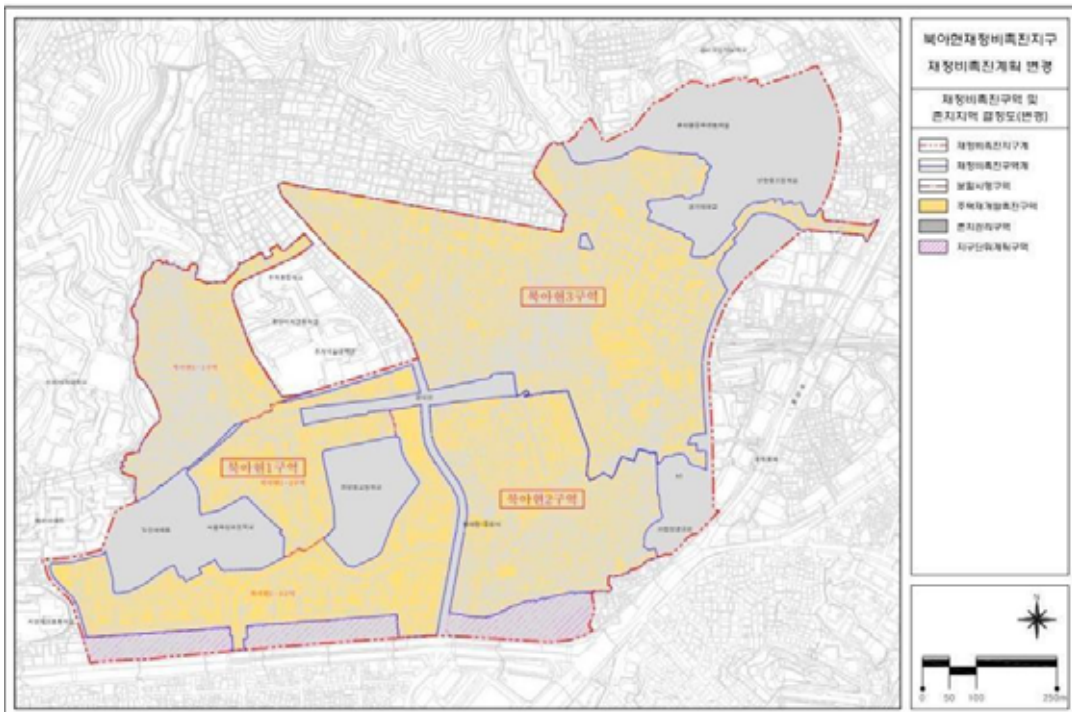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도(변경)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2호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중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01.21.) 및 제2010-247호(2010.07.08.)로 최초결정 및 중복결정 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6-217호(1976.06.08.)로 최초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342호(2002.09.25.), 제2020-268호(2020.06.25.)로 각각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190)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결정(변경) 취지

- 「북촌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삼청동 25-1 일대 ‘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및 ‘감사원~국군서울지구병원 구간 보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의 규모를 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90	9~20	보조간선도 로	1,140	소격동 56	계동 1-1	일반 도로	-	1976-06-08 (서울특별시 제217호)	삼청동길 북측
변경	중로	1	190	9~20	보조간선도 로	1,140	소격동 56	계동 1-1	일반 도로	-	1976-06-08 (서울특별시 제217호)	-삼청동길 북측 -삼청동 25-35(54.6㎡), 25-37(26.25㎡), 125-6(0.8㎡) 추가편입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1-190	중로 1-190	- 일부구간 도로 편입 - 삼청동 25-35(54.6㎡) 편입 - 삼청동 25-37(26.25㎡) 편입 - 삼청동 125-6(0.8㎡) 편입	삼청동 25-1 일원 「삼청공원 입구 주차장 건설계획」(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전면도로 일부 도로 편입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④	주차장	-	종로구 삼청동 25-1 일대	8,000	감)5,000	3,000	2010-01-21 (서울특별시 제2010-11호)	중복결정 - 지상 : 공공청사(④) - 지하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④	주차장	- 위치 : 삼청동 25-1 외 2필지 - 면적 : 8,000㎡ → 3,000㎡, 감)5,000㎡	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결정면적 변경 (사업규모 : 지하1개층 → 지하2개층)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④	공공 청사	-	종로구 삼청동 25-1 일대	15,693.1	증)502.2	16,195.3	2010-07-08 (서울특별시 제2010-247호)	국군서울 지구병원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④	공공청사	- 위치 : 삼청동 25-1 일대 - 면적 : 15,693.1㎡ → 16,195.3㎡, 증)502.2㎡	현황 공공청사 부지의 경계측량에 따른 일부선형 및 면적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게재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련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한옥정책과(☎02-2133-5573) 및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2)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제9조(문화재자료),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보), 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제67조(준용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지정(등록) 종별	지정(등록)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4호	미타사 아미타삼존상 및 불복장 일괄 (彌陀寺 阿彌陀三尊像 및 佛腹藏 一括)	불상 3구 및 복장물 598점	아미타불상:높이66, 무릎너비51 관세음보살상:높이55.5, 무릎너비42 대세지보살상:높이54, 무릎너비42	1707년 (아미타불상) 1769년 (관세음보살상) 조선 전기 추정 (대세지보살상)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5호	월인석보 권7·10 (月印釋譜 卷七·十)	4권	31.3×22.0	1459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6호	미타사 극락전 신중도 (彌陀寺 極樂殿 神衆圖)	1점	전체:148×256 화면:141×227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7호	미타사 극락전 치성광여래도 (彌陀寺 極樂殿 熾盛光如來圖)	1점	전체:147×246 화면:141×220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8호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 (彌陀寺 七星閣 神衆圖)	1점	전체:143.5×159	1899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9호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 (彌陀寺 七星閣 熾盛光如來圖)	1점	전체:139×161.5	189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20호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 (彌陀寺 阿彌陀如來掛佛圖)	4점 (괘불도1점, 복장주머니 2점, 괘불함 1점)	전체:568×340 화폭:554×326	1915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지정(등록) 종별	지정(등록)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21호	신겸 필 감지금니묘법연화경 (信謙 筆 紺紙金泥妙法蓮華經)	7권 7첩	절첩(3장 27절) 첩크기:32.2×13.3	1829년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불교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22호	고봉화상선요 (高峯和尚禪要)	1책	26.4×16.4	1570년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23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1책 (60장)	26.8×17.3	1570년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24호	채용신 필 황석 초상 (蔡龍臣 筆 黃浙 肖像)	1점	125×65	20세기 초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서울특별시 문헌자료 제87호	미타사 도량장엄번 (彌陀寺 道場莊嚴幡)	11점	사보살도:107~108×58.5 팔금강도:103.5~106.7×57.5~59.5	191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문헌자료 제88호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 (覆檢官行次時下人食料記)	1점	194.5×24.5	조선시대	동대문구 (동대문구/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6호	정법사 자수천수관음도	1점	89×70	20세기 전반	성북구 (선학원 정법사)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7호	미타사 정수암 법성스님 법복	2점	가사:너비201, 길이86.5 흑장삼:화장86.7, 길이111	1950년대 추정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8호	미타사 정수암 경화스님 법복	3점	25조착복가사:너비242.7, 길이49.2 고갈:너비52.5, 길이73 모시장삼:화장75.3, 길이111.7	1910년대 추정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나. 지정 및 등록 사유

1) 유형문화재

【 미타사 아미타삼존상 및 불복장 일괄(彌陀寺 阿彌陀三尊像 및 佛腹藏 一括) 】

서울 옥수동 미타사는 아미타삼존불상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으며, 사찰명에서 표방하듯이 한국의 대표적인 미타도량이다. 그런데 미타사 극락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상·관세음보살상·대세지보살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상은 모두 좌상이지만 조성시기와 작가, 재질이 다른 불보살상이다. 현재에 봉안된 형태의 아미타삼존상으로 구성되어 사찰에서 모셔온 것은 1769년 이후로 보인다. 아미타불상은 18세기 양식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으로 불교 조각사 연구에 기준작이며, 불복장의 형태도 거의 완형으로 잘 남아 있어 자료적 가치도 크다. 관세음보살상은 1769년에 조성되었고, 이 상 역시 불복장이 잘 남아 있어 조성연대와 작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세지보살상은 조성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양식상 가장 오래된 상으로 조선 전기 불상의 계보를

있는 상이다. 이처럼 미타사 아미타삼존불상은 각각 다른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각 불상이 갖는 역사가 바로 미타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각각의 불상의 이력이 정확하며, 각 불상의 복장도 조성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희귀성이 있는 유물들이 있어 불교 조각사 연구에 기여도가 크다. 그러므로 미타사 아미타삼존상은 복장물과 함께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월인석보 권7-10(月印釋譜 卷七-十) 】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조선시대 세조와 신미(信眉) 등이 함께 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에서 합편 언해하고 ‘월인(月印)’과 ‘석보(釋譜)’의 두 글자씩을 취하여 서명으로 삼아서 1459년(세조5)에 목판에 판각해서 간행한 목판본 전 25권이다. 편찬 방식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형식을 따라서 『월인천강지곡』 몇 수를 먼저 싣고 『석보상절』을 붙였다. 이 조권(調卷) 과정에서 문장의 내용과 언해에 수정이 많이 되어 권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세종 말엽에 착수해서 세조 초엽까지 13년 동안에 이뤄진 사업으로, 석가일대기의 결정판일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후 제일 먼저 나온 불경언해서(佛經諺解書)이며, 당시의 글자나 말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국어사(國語史)적 가치는 물론 우리 문화사 전반에 걸쳐 매우 귀중한 대표적 불교 문헌의 하나이다. 미타사 복장본은 권7에서 권10에 이르는 4권이 주로 아미타불상에서 수습되었는데, 이와 동일 권차의 판본이 이미 보물(745-2호, 745-3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또한 복장본 4권 중에는 기존의 지정본 가운데 일부 일실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수습되어 그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타사 불상에서 수습한 4권 분량의 『월인석보(月印釋譜)』 복장본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 미타사 극락전 신중도(彌陀寺 極樂殿 神衆圖) 】

조사대상본인 <미타사 극락전 신중도>는 범천, 제석천, 그리고 위태천을 중심으로 천중(天衆)과 신중을 화면 가득히 그린 불화이다. 이는 1887년 일괄 제작된 미타사 극락전에 봉안된 6점의 불화 중 하나로 「양주종남산미타사중건겸단확기(楊州終南山彌陀寺重建兼丹腹記)」(1889년)와 화기를 통해 비구니 봉적 묘정(奉寂 妙靜)이 화주가 되어 금곡영환(金谷永煥)이 금어, 학허석운(鶴虛石雲)이 편수를 맡고, 동호진철(東昊震徹), 화암묘흡(華庵妙洽), 치연(致衍) 5인이 1887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존상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각기 개성있는 모습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 화면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작자의 우수한 기량이 엿보인다. 또한 조성 당시 한성부와 경기도에서 유행했던 신중도의 도상 유형을 반영하고 있고, 양식적으로도 시기적 특징과 화승 금곡당 영환의 화풍을 파악할 수 있는 불화이다. 역사성과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미타사 극락전 치성광여래도(彌陀寺 極樂殿 熾盛光如來圖) 】

<미타사 극락전 치성광여래도>는 극락전 후불탱화인 <아미타여래도>의 향좌쪽에 봉안되어 있는데, 19세기 한성과 경기도에서 많이 제작된 강림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본존인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칠여래와 칠원성군(七元星君)을 비롯한 많은 권속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된 불화이다. 미타사 극락전 <치성광여래도>는 금어 학허석운(鶴虛石雲)이 혜과지한(慧果志漸), 보암금법(普菴

肯法), 종현(宗現)과 함께 제작하였다. 학허 석운은 미타사 극락전 <신중도>에서는 금어 영화에 이어 차화승으로 제작에 참여하였으나, 이 <치성광여래도>에서는 수화승으로 제작을 주도하였다. 그림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했으며, 신광 내부를 금박으로 칠했다. 협시보살의 상의(裳衣)에 드리워진 영락장식은 고분기법이 가해져 두드러져 보인다. 명료하면서도 부드러운 필선과 섬세한 인물묘사와 세부표현 등 화가의 능숙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불화이다. 19세기 말에 제작되었으나 당시 치성광여래도 도상의 시대적인 특징을 알 수 있고, 화풍에서도 주목할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彌陀寺 七星閣 神衆圖) 】

조선 후기 신중도는 제작된 수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는데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는 제석과 범천, 천룡이 함께 그려진 도상을 채택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다. 화면 가장자리에는 3~4cm 정도의 여백(邊兒)을 두고 검은 선을 둘러 화면과 구분하고 좌우 하단에는 세로로 화기란을 마련하여 시주질과 연화질을 기록하고 있다.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는 공법과 윤익이 1899년에 그린 것으로 화기가 남아 있어 봉안처와 조성시기, 작가, 제작 지원자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경기지역 화승들 간의 공유된 신중도상을 통해 그들의 기량과 화풍을 살필 수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더불어 화기에 시주자로 기록된 민씨 일가는 조선말기 척족세력이었던 민두호와 민영휘 그리고 민영휘의 양자이었던 민형식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들의 시주로 제작된 불화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彌陀寺 七星閣 熾盛光如來圖) 】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는 너비 99.3cm, 40cm 정도의 무명천을 2폭을 길이 159cm 정도로 잘라 가로로 이어 전체 세로 139cm, 가로 161.5cm되는 바탕질을 마련하여 색을 올려 불화를 완성하였다.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는 현재 우리가 있는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화면의 상부는 기존 오염으로 변색된 부분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더해져 안료의 변색이 심각하다. 특히 수해로 보살의 얼굴이 오염되고 향 우측 칠성여래와 향 좌측 칠원성군 등에 오염을 남긴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는 화기가 있어 제작자와 후원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당시 화승들이 도상의 공유와 변용을 통해 화면을 구성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공법이라는 화승의 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우수한 작품으로 당대 세력이었던 민두호와 민영휘 일가의 시주로 제작된 불화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彌陀寺 阿彌陀如來掛佛圖) 】

법회용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는 1915년에 조성된 것으로 총 8명의 화승이 참여하였다.(金魚 梵華幘雲, 錦城妙典, 錦溟運齊, 智月性侑, 片手 碧霽玆洙, 春潭梵天, 義雲尙恩, 湖運琪淀) 상궁이 시주에 참여한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는 20세기 전후 서울과 경기지역 괘불도 형식의 발전 단계에서 그 시기의 괘불도 형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괘불도의 장식으로 달려 있는 복장주머니 2점과 괘불함 1점도 괘불도와 연관해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괘불도 형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는 제작 연대와 화

승을 알 수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겸 필 감지금니묘법연화경(信謙 筆 紺紙金泥妙法蓮華經) 】

조사대상본은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소유로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기탁 보관중이다. 조사대상본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경북 문경 대승사(大乘寺)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불사활동을 전개했던 화승(畵僧) 퇴운신겸(退雲信謙)이 1829년에 필사한 『묘법연화경』으로 닥종이를 여러겹 붙여 짙은 감색으로 물들인 감지(紺紙)에 금물감으로 본문을 필사한 <감지금니묘법연화경(紺紙金泥妙法蓮華經)>으로 7권7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본은 서문과 발문 및 시주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초 불교 신앙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귀한 자료이다. 또한 현존하는 조선시대 법화경 사경 가운데 가장 온전할 뿐만 아니라 작성주체와 발원 인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현재 알려진 신겸의 최후 작품으로 볼수 있으며 사경 제작에 소요되는 감지, 금니, 비단, 및 포갑 등의 재료 선택, 사경의 서체와 변상도의 모습 등에서 제작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하고 지극한 정성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 고봉화상선요(高峯和尚禪要) 】

『고봉화상선요(高峯和尚禪要)』는 송나라 고봉선사 원묘(原妙, 1238-1295)가 선(禪)수행의 요령을 간추려서 해설한 선종의 지침서이다. 고봉화상이 수행중 겪은 갖가지 선(禪)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삼아 지혜를 담은 내용으로 방황하는 수행인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이 책이 전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1358년에 최초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본은 29편 61법어로 구성된 책으로 1570년 전라도 무등산 안심사(安心寺) 간본이다. 『고봉화상선요(高峯和尚禪要)』의 고려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399년에 간행된 지리산 덕기사 간본이다. 이후로 약 30여종 이상의 판본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간행되었다. 조사 대상본인 무등산 안심사본은 현전본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매우 희소하며 보존상태가 좋은 편으로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불교학 연구 등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신청 대상본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현재 법장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서로 1570년 평안도 대청 해탈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도서 1책(60張)이다. 법장사에는 이미 강원도 유점사에서 1554년에 간행한 목판본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4호로 지정되어 있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의 선승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1209년에 당나라 종밀의 저술인 ‘법집(法集)’에서 간추려 뽑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사기(私記) 형식으로 찬술한 것이다. 그래서 서명을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라 한 것이다. 조선시대 승가교육기관인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습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전국 주요 사찰 등에서 30여 종 이상이 간행되어 널리 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장사 소장본은 1570년 평안도 상원지 대청산 해탈사 개판본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이른 시기에 출판된 판본으로 동일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전본이 희소할 뿐만 아니라 보존 상

태도 양호하고 본문의 구결을 통한 국어학 연구와 불교학, 인쇄술 및 서지학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채용신 필 황석 초상(蔡龍臣筆 黃漸肖像) 】

조사대상은 대한제국 시기 육군 부위(副尉, 현재의 중위)를 지낸 황석(黃漸, 1848~1938)의 초상화이다. 화면 중간의 향 좌측에는 주문방인(朱文方印) [석지(石芝)]와 [정산군수채용신신장(定山郡守蔡龍臣信章)]이 찍혀있어 이를 통해 채용신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채용신은 1906년 이후 채용신은 상기 두 도장을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1910년대 전중반 작품에 특히 흔하게 확인된다. 육리문(肉理文) 표현 등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과 서양 명암법의 혼용, 콧등을 밝게 처리하고 얼굴과 닿는 부분에 명암을 주어 코 부위가 다소 두툼해 보이는 점, 옷의 굴곡 중 어두운 면에는 옷 색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짙은 색으로 선염을 하고 밝은 부분에는 역시 동색 계열로 강조하는 방식, 1905년부터 1910년대까지 빈번하게 확인되는 돗자리의 문양 등에서도 채용신의 기법이 확인된다. 보존 상태는 채색의 박락이 보이며, 돌기 기법을 한 부분은 일부가 떨어진 상태로 양호한 편은 아니나, 대한제국의 부위 복장이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초상화로 해당 시기의 군복 복식 연구에 적합하다. 채용신 작품과 대한제국 시기의 초상화 중에서 군복 복장이 희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타당하다.

2) 문화재자료

【 미타사 도량장엄번(彌陀寺 道場裝嚴幡) 】

미타사 도량장엄번은 1917년에 조성되었다. 아미타여래괘불도를 그린 8명(金魚 梵華幘雲, 錦城妙典, 錦溟運齋, 智月性侑, 片手 碧霽玆洙, 春潭梵天, 義雲尙恩, 湖運琪琬)의 화승 가운데, 梵華幘雲, 錦溟運齋, 智月性侑가 도량장엄번에도 참여하고 있어 화풍이 서로 유사하다. 도량장엄번은 그 용도가 의례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조성 시기와 조성 화승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따라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覆檢官行次時下人食料記) 】

서울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2018년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한 자료로 상원군에 행차한 복검관 및 그 일행에 대해 상원군 관아에서 식사를 비롯한 각종 음식 등을 대접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회계기록이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시 과정은 제도적으로는 비교적 자세히 알려져 있으나, 최종 결과물인 『검안』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 초검 및 복검 단계의 실물 문서는 드물다. 따라서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는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서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 전체 연결 상태를 놓고 볼 때 완결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문서의 연결 부위가 인위적으로 접합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요컨대 이 문서는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인장의 모양 등을 토대로 후대에 인위적으로 연결시킨 결과물로서 완결성은 갖추지 못한 자료이다. 결정적인 것은 뒷부분 물목의 수량과 본문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 문화재자료

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등록문화재

【 정법사 자수천수관음도 】

추가 조사를 통해 본 정법사 소장 <자수천수관음도>는 제작 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취득 경위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극락선원 불화에 비하여 표현이 훌륭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우나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수 유물은 전체적으로 마모와 탈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수회에 걸쳐 보수한 흔적이 확인된다. 보수 시 원형의 색상과 다른 색으로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전통 자수 기법을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민수로 우리 자수 문화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보인다. 또한 자수 유물은 본래 원형의 색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자수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색과 기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색바래짐과 마모가 심해 이에 대한 보존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 미타사 정수암 법성스님 법복 】

신청문화재는 사찰 전유물로 법성스님의 9조착복가사와 흑장삼이다. 신청 문화재는 부분적으로 헤지거나 수선한 흔적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법성 스님의 9조착복가사는 작법을 행할 때 착용했던 가사로 진한 꽃분홍색이며, 가사에 여밈용 영자와 장식용 천 등이 부착되어 있다. 가사의 주폭 왼편에는 일월광첩이 부착되어 있으며 네 모서리 연 안쪽 변쪽에 사천왕첩이 부착되어 있다. 법성스님의 9조착복가사는 일반적인 가사와 용도 및 형태가 다르고, 현재 이런 용도의 가사가 문화재로 지정된 바 없다. 법성스님의 흑장삼은 1962년 제정, 공포된 조계종 의제법이 적용되기 전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 태고종 장삼과 같은 형태이다. 신청 문화재는 시기, 착용자, 용도가 명확하고 1950~60년대 한복 옷감을 사용하였으며, 1962년 조계종 의제법이 적용되기 전의 구성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기의 흑장삼 유물을 찾아볼 수 없어 희소성이 있다. 따라서 상기 신청 문화재는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

【 미타사 정수암 경화스님 법복 】

신청문화재는 미타사 경화스님 법복으로 25조착복가사, 고깔, 모시가사 총 1건 3점이다. 25조 가사는 작법을 행할 때 착용했던 가사로 품계별로 보면 상상품(上上品)에 속하며 홑으로 구성되었다. 가사의 색상은 진한 홍색으로 홍자색, 연한 황색, 청색의 여밈영자가 부착되어 있고 가사의 네 모서리 연 안쪽 변쪽에 사천왕첩이 부착되어 있다. 연대를 1910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는 목서가 좌측 여밈영자에 남아있다. 고깔은 나비춤을 출 때 가사와 함께 쓰던 것으로 전면 상단에는 부처님이 연화대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삼베에 배접하고 고깔 부분에 실로 꿰매어 부착했다. 고깔은 1900년에 조성된 신록사 감로탱에 표현된 고깔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화 스님의 모시장삼은 전삼 없는 도포와 형태가 유사하다. 가늘고 얇은 끈을 옷고름의 위치에 몸을 한바퀴 돌려서 오도록 만들어 부착했다. 신청 문화재는 시기, 착용자, 용도가 명확하고, 1900년대 초반의 한복 옷감을 사용한 것과 가사의 여밈영자의 목서는 1910년 내외의 연대에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시기의 유사 유물을 찾아볼 수 없어 희소성이 있다. 따라서 상기

신청 문화재는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문화재 지정(등록)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76호

중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법인 본점 소재지(폐문 부재) 및 대표 주소지(불분명)로 송달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2022.6.2.~2022.6.16.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취순환건설 (안현덕)	건축공사업 01-33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7, 602호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기술능력, 자본금)	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등록말소 (2022.6.30.)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8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및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한 휴면조합 지정 및 해산명령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6.2.~ 2022. 6.15.(14일간)
2. 휴면조합 : 서울경인지류코딩공업협동조합외 8개소

조합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록내용		지정사유
	주소	설립일	
서울경인지류코딩공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필동로 25	93.11.12.	- 이사장 공석 -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108호	89.11.29.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초강남수퍼마켓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3, 양곡도매시장 지하3-1호	10.06.08.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강동주양소평시장사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8	98.12.24.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남대문엑세서리사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남창동 49-3, E동 4층 남문	08.04.01.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문경가든파라다이스사업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패션관동 11층 자산관리사무실	15.02.25.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강남서초화훼사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5, 드림타운 지하	12.04.13.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중장비부품사업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6, 대일빌딩 3층 302호	16.05.04.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혁신식품사업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2관 3층	18.03.14.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 휴면조합 지정요건 : 1년이상 미수행, 총회 2년이상 연속 미개최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

3. 해산조합 : 잠실올림픽로사업협동조합(1개소)

조합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록내용			지정사유
	주소	설립일	휴면지정일	
잠실올림픽로 사업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50-13, 2층	10.11.12.	18.1.4.	- 휴면조합 지정일 이후 1년내 활동재개 미신청

4. 공고내용

-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 나.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료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19층 경제정책과
- 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접수 후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하였거나 재개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 라. 휴면조합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 2항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박병준, 02-2133-5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8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6.2. ~ 2022.6.1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6588284	마포구 독막로 154-17(창전동)	수도요금	2022. 3 외 19납기	20회	3,673,260원	

압류 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19-1 토지, 건물	이갑순	540515-2***** (등기번호110500241414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독막로 154-17 (창전동 219-1)	3,673,260원	2022.6.17.부터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익새(☎02-3146-35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49번길 **, ***호 (포곡읍)	일시: 2022-02-10 17:4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61m 초과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22. 6. 30.
서*봉	전라남도 순천시 감사터길 **, ***호 (동외동)	일시: 2022-02-22 19:36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92m 초과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22. 6. 30.
박*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115번길 *** (향남읍)	일시: 2022-03-04 10:57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4m 초과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6. 30.
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 ***호 (삼전동)	일시: 2022-03-07 10:21 장소: 여의도동 10-3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6. 30.
이*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 ***호 (영등포동1가)	일시: 2022-03-08 10:04 장소: 여의도동 10-3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6. 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20, ***동 ***호 (****아파트)	일시: 2022-03-18 14:12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2m 초과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6. 30.
P*** Q****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 , ***호	일시: 2022-03-30 09:1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24m 초과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6. 30.
강*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46, ***동 ***호 (왕길동)	일시: 2022-04-04 10:42 장소: 덕은지구 리버파크자이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일: 2022.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6.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임*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39번길 **-* , ***호 (우만동)	일시: 2021-12-02 13:17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22. 2.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4. 30.
손*욱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 ***호 (해남읍)	일시: 2021-12-13 16:42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36m 초과	처분일: 2022. 2. 24.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22. 4. 30.
박*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 , ***동 ****호 (대소면)	일시: 2022-01-06 07:54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46m 초과	처분일: 2022. 2.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4.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가. 납부기한: 2022. 6.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

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95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변경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변경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기간 : 2022. 6. 2. ~ 2022. 6. 16.(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사유
						당초	변경	
삼성홈엔씨(주) (김학수)	토목건축공사업 01-04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 1630호(서초동, 강남빌딩)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2021.12.31.) 까지 미보고	법 제49조제1항	법제83조 제8호의2	등록말소 (2022. 5. 27.)	등록말소 (2022. 6. 25.)	공시송달 기간 확보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2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동의안 (1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승인안 (3건)	1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무국 (재무과)
	2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무국 (재무과)
	3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무국 (재무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29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재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343호(20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2022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2.5.18.)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재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6. 2. ~ 2022. 6. 16.(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배현경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xodiddls@seoul.go.kr
 -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2133-4635)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43호('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변경(안)
 - 변경사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주거 주용도'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50% → 90%), 준주거지역 용적률(400% → 500%) 상향을 '19.10.17.부터 3년 한시로 운영 중이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I-2. 계획의 범위	I-2. 계획의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 시간적범위 :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동일 ○ 공간적범위 : 대상지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와 동일	○ 시간적범위 : 목표연도는 2025년 ○ 공간적범위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
I-3.경과조치 및 구속력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u>운영기간(3년 한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까지 유효</u> ○ 한시적 주거비율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은 2030 도사·주거환경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 전까지 적용	I-3.경과조치 및 구속력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u>2025년 3월27일까지(다만, 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2030 도사·주거환경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이 수립될 경우, 그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 신청까지 유효</u>
II.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생략)	< 삭제 >
III-2.주거비율 및 공공주택 확보기준 < 신설 > ○ 금회 주거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주거비율 적용과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별도로 마련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u>주거비율 (현행) 50%→ 90% 이하 완화적용</u> (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비율 완화범위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9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u>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를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u> [공공주택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II-2.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주거비율 90%이하인 한양도성 도심부는 변경없음 ○ 금회 주거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주거비율 적용과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별도로 마련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u>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적용</u> (비주거 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이상 의무) - 주거비율 완화범위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u>전체 용적률의 90% 범위 내에서</u>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삭제 >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변경 전	변경 후												
1/2은 공공주택 공급 < 신설 >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하며,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총 세대수’의 60%이상 전용 40㎡ 이하 확보 - 주거비용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주택 확보 시 공공이 부담하여 인수하는 것이 원칙. 단, 상업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가능 [상한용적률 적용사항] < 생략 > <표>주거비용 적용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별 주거비용 운영현황</th><th>변경</th></tr> </thead> <tbody> <tr> <td>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td><td>주거비용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용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용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td></tr> <tr> <td>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td><td></td></tr> </tbody> </table>	지역별 주거비용 운영현황	변경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주거비용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용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용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단, 상업지역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시 매입예산의 과다소요 등으로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가능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의무비용 산정 시 제외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로 확보 - 주거비용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주택 확보 시 공공이 부담하여 인수 하는 것이 원칙 < 삭제 > <표>주거비용 적용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정</th><th>변경</th></tr> </thead> <tbody> <tr> <td>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td><td>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td></tr> <tr> <td>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td><td>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제외</td></tr> </tbody> </table>	기정	변경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제외
지역별 주거비용 운영현황	변경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주거비용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용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용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기정	변경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성 도심부 ○ 용도용적률 배제지역으로 인해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주거허용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공급  <u><그림>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확보기준</u>	주거허용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공급  <u><그림>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지역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u>
Ⅳ. 행정사항 및 적용절차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u>운영기간(3년 한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 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까지 유효</u> ○ 한시적 주거비율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은 2030 도 사·주거환경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 문)수립 전까지 적용	Ⅲ. 행정사항 및 적용절차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u>2025년 3월27일까지(다만, 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2030 도사·주거환경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문)이 수립될 경우, 그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 신청까지 유효</u>

<붙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재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양식

성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의견			
제출일	년 월 일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6호

2022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 직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직위	(전)이사장		성명	조성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4,077	1,246	31	15,292	
본인	답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490번지 235.00㎡ 중 23.50㎡	265	17	0	282	

본인	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492번지 536.00㎡ 중 53.60㎡	412	0	31	381	
본인	답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493번지 1,683.00㎡ 중 168.30㎡	1,166	121	0	1,287	
본인	답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498번지 992.00㎡ 중 99.20㎡	919	63	0	982	
본인	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499-1번지 1,818.00㎡ 중 181.80㎡	1,639	155	0	1,794	
본인	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501번지 747.00㎡ 중 74.70㎡	1,471	157	0	1,628	
본인	답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502번지 635.00㎡ 중 63.50㎡	717	45	0	762	
본인	임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산 30-3번지 23,802.00㎡ 중 2,380.20㎡	4,165	357	0	4,522	
본인	임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산 33-1번지 19,438.00㎡ 중 1,943.80㎡	3,323	331	0	3,654	
▶ 건물(소계)			1,890,000	367,000	0	2,257,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건물 252.46㎡ 중 189.35㎡	1,417,500	275,250	0	1,692,75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건물 252.46㎡ 중 63.11㎡	472,500	91,750	0	564,25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000	0	0	9,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그랜저 HG 배기량(2,999cc)	9,000	0	0	9,000	
▶ 예금(소계)			33,408	78,239	12,792	98,855	
본인		국민은행 1,891(1 증가), 삼성증권 11,004(11,004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485(166 증가), 신한은행 118, 우리은행 53,338(50,948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8(519 감소)	5,244	62,119	519	66,844	급여 저축
배우자		국민은행 4,315(1,279 증가), 우리은행 390(273 감소)	3,699	1,279	273	4,705	
손자1		국민은행 11,662(938 증가), 우리은행 3,840(280 증가)	14,284	10,218	9,000	15,502	
손자2		국민은행 4,356(738 증가)	3,618	738	0	4,356	
손녀1		국민은행 7,448(885 증가)	6,563	3,885	3,000	7,448	
▶ 채무(소계)			561,927	0	5,536	556,391	
본인	금융채무	우리은행 556,391(5,536 감소)	561,927	0	5,536	556,391	
▶ 지식재산권			-	-	-	-	
본인	저작권재산권	"물리, 그 생각의 스컬" 책	-	-	-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384,558	446,485	7,287	1,823,756	증감액: 439,198천원 (가액변동: 368,215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신하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648,012	22,713	0	670,725	
본인	대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306-4번지 614.00㎡	178,981	0	0	178,981	
모	답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61-5번지 3,035.00㎡	365,111	18,816	0	383,927	
모	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647-5번지 866.00㎡	103,920	3,897	0	107,817	
▶ 건물(소계)			741,481	117,119	0	858,6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건물 114.71㎡	464,000	117,000	0	581,000	
배우자	상가(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건물 4.83㎡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창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건물 4.83㎡	1,381	119	0	1,500	
모	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장안2차초원아파트 건물 69.39㎡	76,100	0	0	76,1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311	0	5,671	31,64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그랜저 TG 배기량(2,656cc)	3,541	0	501	3,04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카니발 배기량(3,342cc)	33,770	0	5,170	28,600	

▶ 예금(소계)			366,983	54,198	190,461	230,720	
본인		NH투자증권 86, 국민은행 1,606(1,400 증가), 농협중앙회 1,661(2,575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9,750(700 증가), 삼성생명보험 281, 삼성화재해상보험 19,300(2,800 증가), 새마을금고 32,713(1,264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6, 우리은행 1,241(1 증가)	63,154	25,320	21,730	66,744	가계자금사용
배우자		(주)KB손해보험 22,068(3,508 증가), (주)KEB하나은행 1,062(1,062 증가), DB생명보험(주) 7,711(571 증가), DB손해보험(주) 43,495(1,497 증가), 국민은행 276(1,815 감소), 농협중앙회 5,160(3,206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0(9,288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47(107 증가), 삼성생명보험 21,880(61,070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0(8,570 감소), 새마을금고 15,131(23,244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8,769 감소),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3,322 감소), 신한은행 930(911 증가), 우리은행 680(8,377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40,216 감소), 한화손해보험 1,800(1,800 증가)	272,849	16,296	168,305	120,840	
모		농협중앙회 754(242 증가)	512	242	0	754	
장녀		국민은행 6,478(650 증가), 새마을금고 16,171(565 증가), 신한은행 8,500(1,400 증가), 우리은행 38, 키움닷컴증권 6,064(6,064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472(424 감소), 한국포스증권(주) 3,659(3,659 증가)	30,468	12,340	426	42,382	
▶ 증권(소계)			0	11,216	0	11,216	
장녀	상장주식	(주)아하 20주(20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53주(53주 증가), 에이텍 7주(7주 증가), 현대자동차보통주 19주(19주 증가), 현대제철보통주 33주(33주 증가), 호텔신라보통주 32주(32주 증가)	0	11,216	0	11,216	주식

▶ 채무(소계)			509,759	306,210	75,796	740,173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127,129(2,740 감소)	129,869	0	2,740	127,129	
배우자	금융채무	(주)KB손해보험 1,640, (주)KEB하나은행 100,000(100,000 증가), DB손해보험(주) 2,270(2,270 증가), 국민은행 274,416(8,690 감소), 삼성생명보험 16,900(26,200 감소), 우리카드 0(666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20,000 감소), 현대캐피탈 13,878(17,500 감소)	379,890	102,270	73,056	409,104	
장녀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203,940(203,940 증가)	0	203,940	0	203,94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284,028	-100,964	120,336	1,062,728	증감액: -221,300천원 (가액변동: 134,161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이한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건물(소계)			346,160	0	0	346,16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건물 68.99㎡	300,000	0	0	300,000	
배우자	상가(분양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현대클러스터 갈매역 스퀘어 알토 지식산업센터 건물 45.36㎡	46,160	0	0	46,16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1,000	0	0	31,00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스파크 배기량(995cc)	3,000	0	0	3,000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산타페 배기량(1,995cc)	14,000	0	0	14,000	
장녀	자동차	2017년식 산타페 배기량(1,995cc)	14,000	0	0	14,000	
▶ 예금(소계)			186,110	70,859	11,012	245,957	
본인		(주)KEB하나은행 684(274 증가), 국민은행 10,392(4,328 증가), 농협은행 654(637 증가), 농협중앙회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2,779(14,700 증가), 신한라이프(신한생명) 5,180(566 증가), 우체국 0(1 감소), 중소기업은행 36	59,223	26,505	6,001	79,727	보험금납입, 자녀 저축 등으로 증가

배우자		(주)KB손해보험 7,717(1,495 증가), (주)KEB하나은행 12(30 감소), (주)카카오페이증권 8(8 증가), 국민은행 18,097(18,05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3,835(57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75,977(7,660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9(9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401(1,801 증가), 신한라이프(오렌지 라이프) 11,699(1,243 증가), 에이시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3,235(431 증가), 우체국 3,871(572 증가), 중소기업은행 3,731(1,776 증가), 한국투자증권 27(27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8,298(685 증가)	104,620	36,150	1,853	138,917	보험금납입, 자녀 저축 등으로 증가
장녀		농협은행 220(22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5,618(2,422 증가), 우리은행 556(3,158 감소)	6,910	2,642	3,158	6,394	
차녀		(주)KEB하나은행 148(136 증가), 농협은행 220(22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5,074(4,351 증가), 신한은행 21(21 증가)	10,735	4,728	0	15,463	
삼녀		(주)KEB하나은행 170, 농협은행 850(20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436(634 증가)	4,622	834	0	5,456	
▶ 증권(소계)			200	1,048	0	1,248	
본인	비상장주식	오버다임케이 400주	200	0	0	200	배우자 주식 신규매입
배우자	상장주식	LG에너지솔루션 1주(1주 증가), 카카오뱅크 4주(4주 증가), 카카오페이 1주(1주 증가), 현대중공업 2주(2주 증가)	0	1,048	0	1,048	
▶ 채무(소계)			190,554	83,330	12,074	261,810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18,374(6,655 증가), 삼성생명보험 163,344(4,385 감소), 신한라이프(신한생명) 1,400	180,848	9,500	7,230	183,118	
배우자	금융채무	(주)KB손해보험 3,200(2,20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453(2,390 증가),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2,799, 우리카드 0(4,844 감소), 하나캐피탈 69,240(69,240 증가)	9,706	73,830	4,844	78,692	
총 계			372,916	-11,423	-1,062	362,555	증감액: -10,361천원 (가액변동: 0천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1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 「청원법」이 전면 개정(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안 제1조 ~ 제4조)
- 나. 청원심의회 구성(안 제5조)
- 다. 심의회 위원 임기, 심의사항,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안 제6조 ~ 제9조)
- 라. 심의회 개최 및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마. 심의회 관련자료 제출, 비밀준수 의무, 간사, 수당(안 제12조 ~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249, FAX 02-399-9737
- 이메일 : hwanjang@sen.go.kr

※ 이 조례(규칙)의 개정(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 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2-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종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0	4	보행자 전용도로	135	창신동 458-5	창신동 418-1	특수 도로	서고 제2002-112호 (2002.4.6.)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실효)
신설	소로	3	11	6	보행자 전용도로	68	창신동 436-78	창신동 436-14	특수 도로	서고 제2002-112호 (2002.4.6.)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실효)

나. 실효일자 : 2022. 0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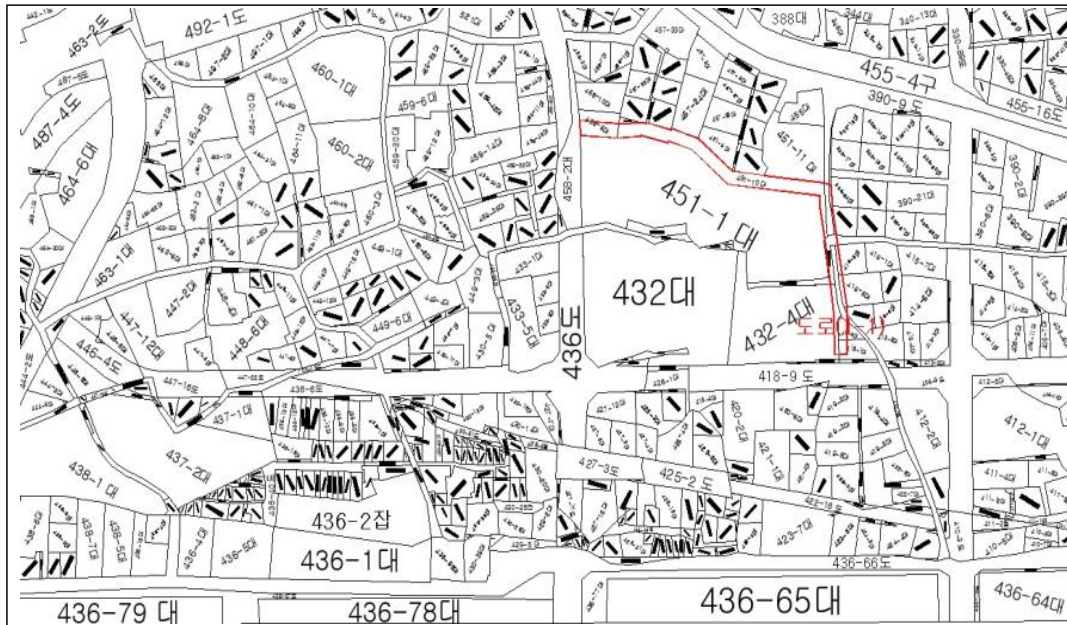
다.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라. 지형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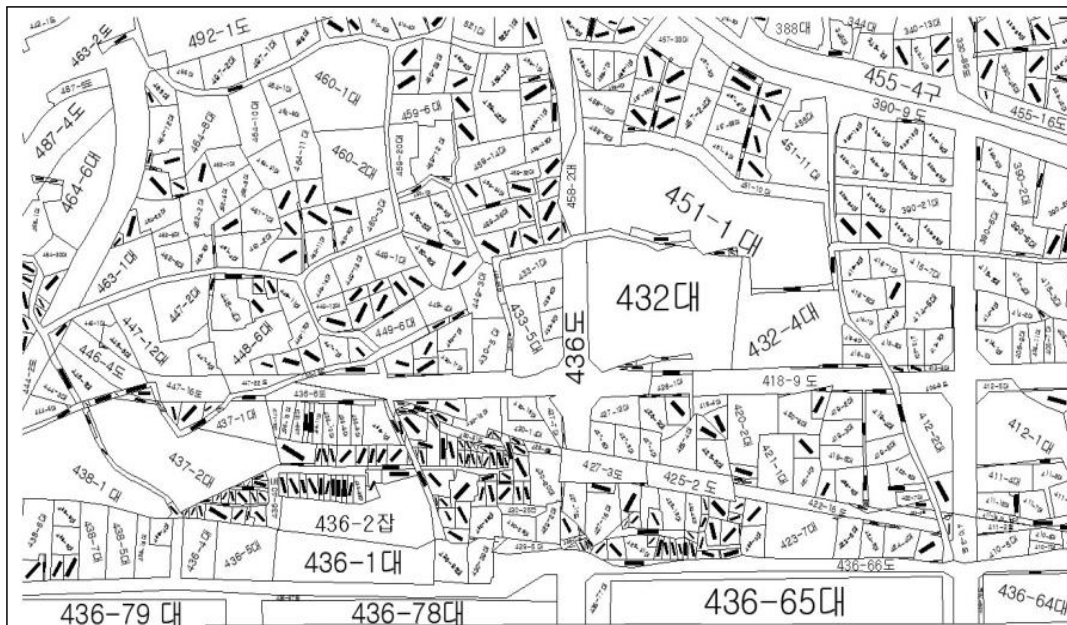
마.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65, 2695) 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연번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창신승인041)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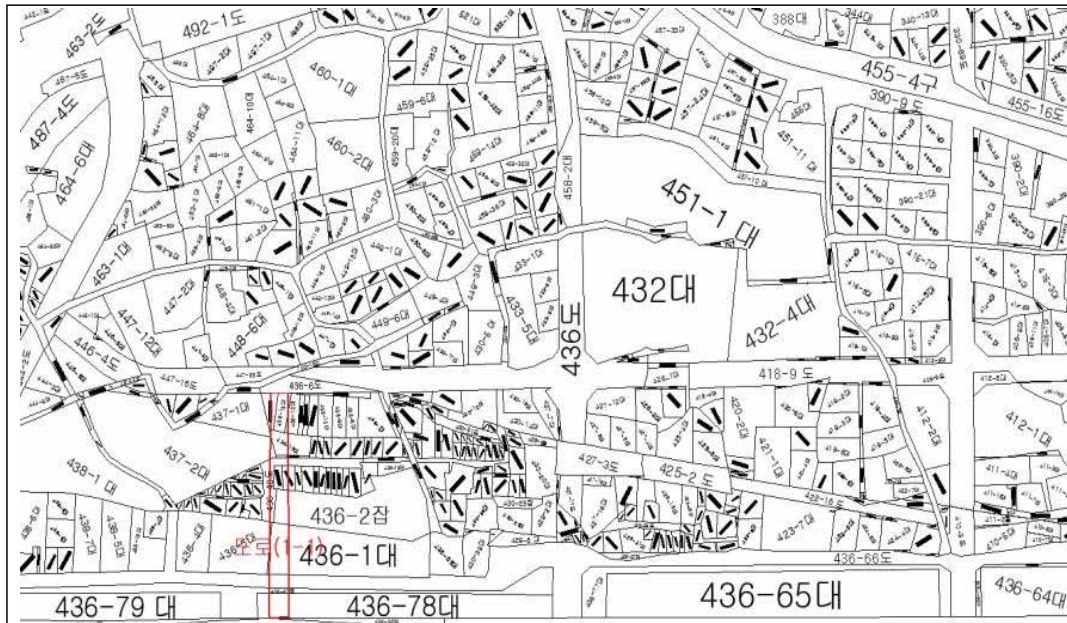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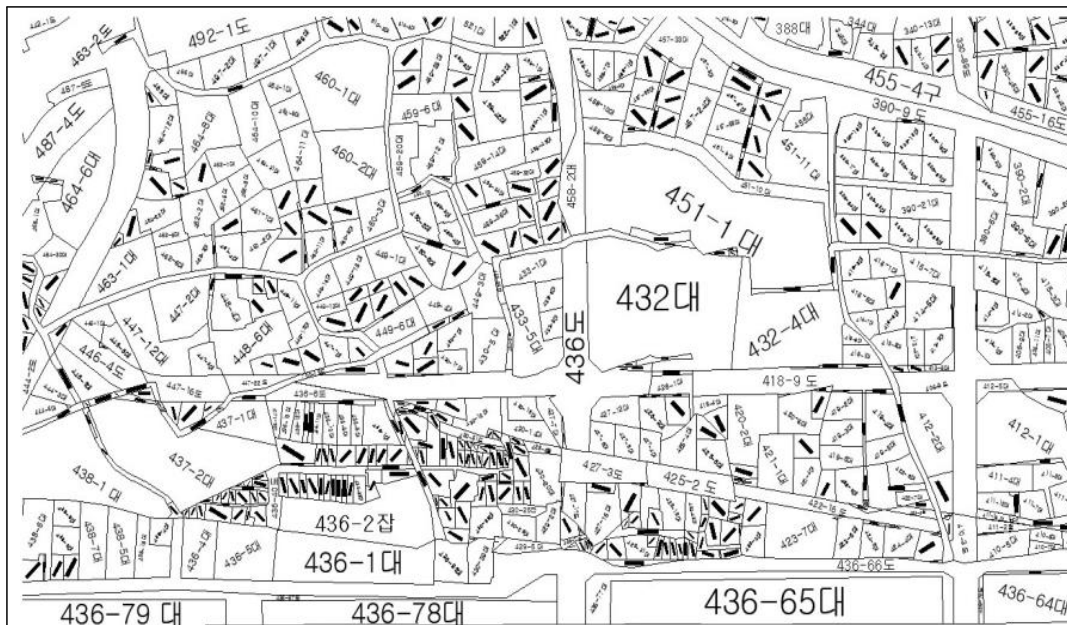


연번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창신승인042)

○ 기정



○ 변경



◆ 종로구고시 제2022-8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1-6호(2021.2.4.)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종로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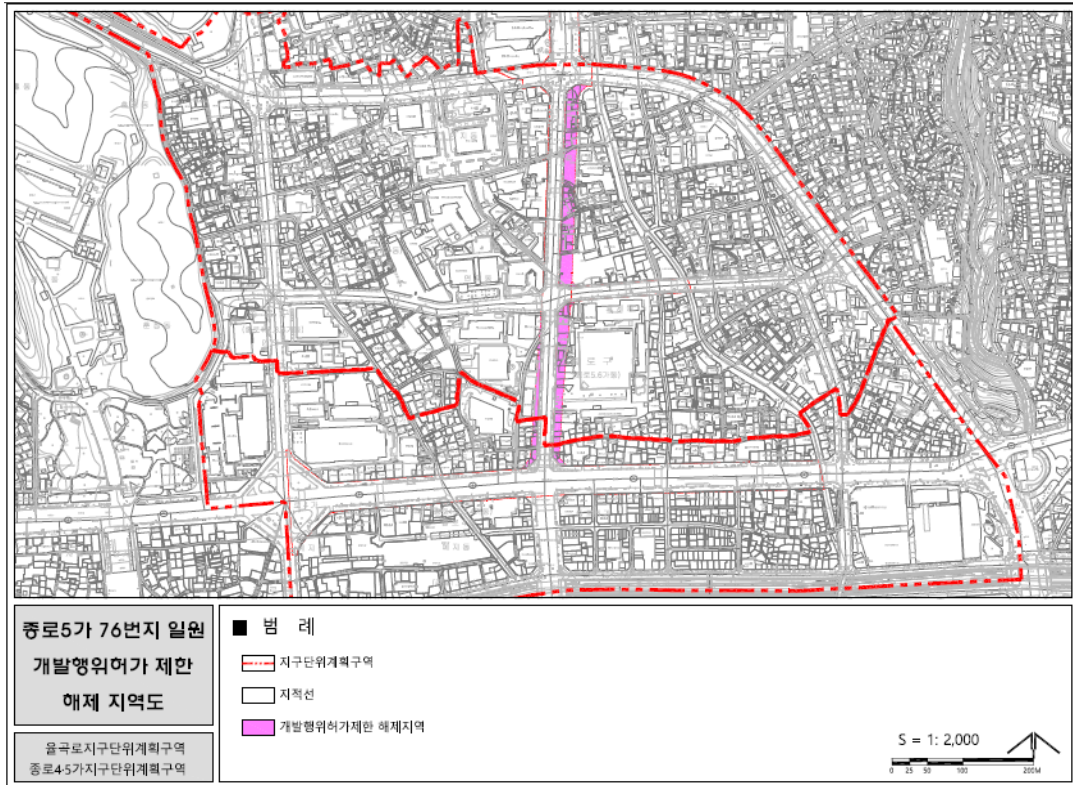
-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76번지 일원(면적 9,077㎡)
-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일로부터(2022.6.2.)

2. 해제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대학로 실효 부분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대상지가 포함된 율곡로 및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 시점에 맞춰 개발행위허가를 해제하고자 함
- ※ 단,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재정비 방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하고자 함.

3. 기타 사항은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도면



◆ **성북구고시 제2022-103호**

도시계획시설(2020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149호(2018.6.7.)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108호(2020.0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성북구 장위동 산3-122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 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산3-122번지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2020 오동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406㎡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20. 6. 25. ~ 2022. 6. 24.

○ 변 경 : 2020. 6. 25. ~ 2025. 6. 24.

사. 변경사유 : 공원 조성에 따른 공사 시행 및 준공 등에 따른 기간 소요

아. 수용할 토지(변경없음)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고시 제2022-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2-89호(1972.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80-155호(1980.05.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0-489호(2020. 4.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하여 열람공고하고, 제2020-99호 (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2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당초	삼양로170길 16~ 삼양로 640-7	삼양로170길16~ 삼양로 640-7	폭 6m 연장 11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80-155호 (1980.05.03.)	사업기간 연장
변경	도로개설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있음)

○ 지정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입(변경 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삼양로170길16~삼양로640-7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	우이동 266-49	도로	407	263.75		강북구	전부				
2	우이동 6-9	대	265	265		서울시	전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삼양로170길16~삼양로640-7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우이동 6-9	조경 등		1식	강북구 미아동 659-18	백일섭				101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102호
					강북구 우이동6-6 일영하이츠빌라 201	한유희				201호
					강북구 삼양로658, 1동 106호(우이동, 성원아파트)	양동훈				202호
					동작구 서달로10라길21 (흑석동)	김성옥				301호
					강북구 송인로7가길37, 106동1502호(미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황인선				302호
					강북구 수유동 558-56 진주빌라 씨동 302호	전복순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국민은행	근저당권	401호
					강북구 삼양로170길 16, 402호(우이동)	마재현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하나은행	근저당권	402호
					강북구 삼양로170길16, 비01호(우이동, 일영빌라)	설황희	종로구 종로47(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은행	근저당권	지하 1호
		검차대 등		1식	강북구 삼양로 648	동아온수 주식회사				

□ 위치도



□ 현황사진



◆ 도봉구고시 제2022-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봉구고시 제45호(2022. 03. 10.)로 결정 고시되고 도봉구고시 제90호(2022. 04. 28.)로 변경결정된 도봉구 방학동 179-5호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도봉구 관내 도로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한옥도서관 대지분할(담장위치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29	6	집산 도로	251	방학동 533-6	방학동 산80-2	일반도로	-	도봉구고시제45호 (2022.3.10.)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529	6	집산 도로	251	방학동 533-6	방학동 산80-2	일반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529	도로 곡선부 분할변경 및 한옥도서관 획지반영 - 면적(m) : 1,550 → 1,554(증4)	방학동 179-5일대(한옥도서관) 대지분할(담장위치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22-69호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되고, 서대문구고시 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2010-223호(2010.6.17)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11-17호(2011.4.15.), 서대문구고시 제2014-89호(2014.7.9.), 서대문구 고시 제2017-32호(2017.3.2.), 서대문구 고시 제2019-53호(2019.4.10.)로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변경) 고시된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서,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과 관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40-3번지 일대

다. 면 적: 2,012,00㎡

라.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도면 : 붙임 참고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1907)

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1. 총괄표(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40-3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2,012.0	860.9				46	
기 반 시 설	소계	363.5	363.5			-	
	광장	91.1	91.1			-	
	산책로	272.4	272.4			-	
조경시설	18.8	18.8				1	
휴양시설	119.1	119.1				13	
유희시설	359.5	359.5				11	
운동시설	-	-				-	
교양시설	-	-				-	
편익시설	-	-				-	
관리시설	-	-				21	
녹지 및 기타	1,151.1	-				-	
시설율 (법정 60%이하)	$(860.9/2,012.0) \times 100 = 42.79\%$						
건폐율 (법정 5%이하)	$(0/2,012.0) \times 100 = 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012.0	860.9					46	
기반 시설	소계			363.5	363.5					-	
	광장	가-1	부지내	52.5	52.5	-				-	
	광장	가-2	부지내	38.6	38.6	-				-	
	산책로	-	부지내	212.0	212.0	-				-	
		-	부지내	10.5	10.5	-				-	
		-	부지내	15.8	15.8	-				-	
		-	부지내	8.8	8.8	-				-	
		-	부지내	25.3	25.3	-				-	
조경시 설	소계			18.8	18.8					1	
	관상용 식수대	나-1	부지내	4.9	4.9	-				-	
	관상용 식수대	나-2	부지내	3.2	3.2	-				-	
	관상용 식수대	나-3	부지내	1.8	1.8	-				-	
	파고라	①	부지내	-	-	-				1	
	앉음벽	②	부지내	6.4	6.4	석재				-	
	디딤석	③	부지내	2.5	2.5	석재				-	
휴양시 설	소계			119.1	119.1					13	
	휴게소	다-1	부지내	42.6	42.6	-				-	
	휴게소	다-2	부지내	57.7	57.7	-				-	
	휴게소	다-3	부지내	9.4	9.4	-				-	
	휴게소	다-4	부지내	9.4	9.4	-				-	
	등의자	④	부지내	-	-	철재, 목재				13	
유흥시 설	소계			359.5	359.5					11	
	놀이터	라	부지내	359.5	359.5	-				-	
	슬라이드	⑤	부지내	-	-	-				2	
	경사놀이대	⑥	부지내	-	-	-				1	
	통과놀이대	⑦	부지내	-	-	-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통나무 정검다리	⑧	부지내	-	-	-				1	
	고목농기	⑨	부지내	-	-	-				2	
	볼록놀이대	⑩	부지내	-	-	-				3	
관리시 설	소계			-	-					21	
	공원명 안내판	⑪	부지내	-	-	-				1	
	공원이용 안내판	⑫	부지내	-	-	-				1	
	공원등	⑬	부지내	-	-	-				13	
	CCTV	⑭	부지내	-	-	-				4	
	분전함	⑮	부지내	-	-	-				1	
	경계휀스	⑯	부지내	-	-	-				1	
녹지 및 기타				1,151.1	-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72.4	산책로			
신설	소계				158.3	272.4				
	산책로		1	1.5~2.0	118.0	212.0		가-1	가-2	
	산책로		2	5.0~6.5	2.0	10.5		가-2	라	
	산책로		3	1.0~3.5	7.0	15.8		산-1	라	
	산책로		4	1.0~3.0	6.0	8.8		산-1	라	
	산책로		5	1.0	25.3	25.3		서측진입	산-1	

◆ 서대문구고시 제2022-70호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호(2007.6.14.)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6호(2013.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4호(2014.3.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호(2016.4.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125호(2016.9.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175호(2016.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호(2018.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183호(2018.12.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5호(2022.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변경) 고시된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서,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4-43번지 일원

다. 면 적: 2,270.00㎡

라.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도면: 붙임 참고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1907)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1. 총괄표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44-43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70.0	1,011.2				54	시설율 44.6%
기 반 시 설	소계	167.5	167.5				
	도로	167.5	167.5				
조경시설	200.0	200.0					
휴양시설	50.6	50.6				19	
유희시설	593.1	593.1				23	
관리시설	-	-				12	
녹지 및 기타	1,258.8	-					녹지율 55.4%
시설율 (법정 60%)	$(1,011.2/2,270.0) \times 100 = 44.6\%$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어린이공원			2,270.0	1,011.2					54	
기반 시설	소계			167.5	167.5						
	산책로		부지내	167.5	167.5						
조경 시설	소계			200.0	200.0						
	산벽	①	부지내	200.0	200.0						
휴양 시설	소계			50.6	50.6					19	
	휴게소	가-1	부지내	16.6	16.6						
	휴게소	가-2	부지내	13.9	13.9						
	휴게소	가-3	부지내	20.1	20.1						
	파고라	②	부지내							2	
	평의자	③	부지내							6	
	등의자	④	부지내							11	
유희 시설	소계			593.1	593.1					23	
	어린이놀이터	나-1	부지내	554.5	554.5						
	체력단련장	나-2	부지내	15.8	15.8						
	체력단련장	나-3	부지내	22.8	22.8						
	조합놀이대A	⑤	부지내							1	
	조합놀이대B	⑥	부지내							1	
	그네	⑦	부지내							1	
	시소	⑧	부지내							1	
	흔들놀이대	⑨	부지내							3	
	징검다리놀이	⑩	부지내							11	
	생활체육시설	⑪	부지내							5	
관리 시설	소계			-	-					12	
	음수전	⑫	부지내							1	
	공원등	⑬	부지내							8	
	안내판	⑭	부지내							1	
	CCTV	⑮	부지내							1	
	분전함	⑯	부지내							1	
녹지 및 기타			부지내	1,258.8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산책로			
신설	소계					167.5				
	산책로		1	2.3	23.5	53.3	산책로	대지경계	유희시설	
	산책로		2	3.4	2.7	9.4	산책로	산책로	유희시설	
	산책로		3	1.5	7.9	13.4	산책로	대지경계	유희시설	
	산책로		4	2.3	18.9	43.9	산책로	산책로	유희시설	
	산책로		5	2.0	5.0	10.5	산책로	대지경계	유희시설	
	산책로		6	2.0	18.3	37.0	산책로	유희시설	산책로	



◆ 강서구고시 제2022-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6호(2000.02.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강서구 방화동 621-1~620-2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20-92호(2020.06.25.) 및 제2020-134호(2020.09.17.), 제2020-141호(2020.10.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변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2-790호(2022.5.6.)로 열람공고한 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서구 방화동 621-1~620-288간

나. 사업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 명: 강서구 방화동 621-1~620-2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라. 사업 규모: 도로개설(B=10m, L=135m) 등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 성 명: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붙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변경있음)

■ 공사명 : 방화동 621-1 ~ 620-2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1	기정	방화동 621-24	경비실	철재	6㎡	김*혁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길 ***, *동 *호(양재동, ***빌라)	3/4	-	-	-	
			전기실	철재	2㎡			1/4	-	-	-	
			전기고압 박스	철재	1㎡	김*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길 ***, *동 *호(양재동, ***빌라)		-	-	-	
	변경	방화동 621-24	경비실	철재	6㎡	주식회사 코원솔루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57(양재동, 신동아빌라)	1/1	-	-	-	
			전기실	철재	2㎡							
			전기고압 박스	철재	1㎡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9	건물	1층	35㎡	최*섭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	1/1	-	-	-	
			건물	2층	35㎡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30	건물	1층	14㎡	이*옥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길 ** - *(방화동)	1/1	-	-	-	

연번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건물	2층	14㎡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93	건물	1층	64㎡	이*옥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길 **-(방화동)	1/1	-	-	-	
	추녀		지붕	지붕	15㎡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67	건물	1층	22㎡	김*준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33.6/4.6	-	-	-	
	추녀		철골, 천막	7㎡	윤*현	서울 광진구자양로44나길 **.* ***호(구의동)	10/44.6	-	-	-	-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4	건물	1층	16㎡	최*섭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아파트 ***호	-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27(방화동)	근저당권	
						최*호	서울 강서구 강서로 ***, ***동 ***호(화곡동, ****)	-	-	-	-	
						주식회사시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9, 309-2호(고잔동, 우진빌딩)	-	-	-	-	
			건물	2층	16㎡	주식회사시뉴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606-4호(정다운가)	-	-	-	-	

연번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3길 **(방화동)	-	서울특별시농업협 동조합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근저당권	
						강*민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 ***동 ***호(공항동, *****)	-	-	-	-	
	변경	-	-	-	-	-	-	-	-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있음)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621-1~620-2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삭제	기정	방화동 612-154	대	86	15	주식회사 시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9, 309-2호(고잔동, 우진빌딩)	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가양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	-	-	-	-	-	-	-	-	-	
1	기정	방화동 612-160	도로	122	122	나*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번길 ** ***동 ***호(연산동, **아파트)	1/1	석곡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강변로 5	근저당권	
	변경	방화동 612-160	도로	122	122	나*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번길 ** ***동 ***호(연산동, **아파트)	2/5	석곡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강변로 5	근저당권	
						노*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번길 *-*, ***호(초량동, *****)	3/5				
2	기정	방화동 612-274	도로	42	7	주*성	서울 강서구 방화동 ***	1/1	-	-	-	
3	기정	방화동 612-304	대	23	23	최*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번길 ** *층호(호계동)	1/1	-	-	-	
4	기정	방화동 612-305	대	20	20	김*진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신흥길 **.*	1/9	-	-	-	
						진*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 ***.***호(효자동2가, *****)	1/9	-	-	-	
						박*균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외항길 **	1/9	-	-	-	
						정*숙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 *동 ****호(오류동, **아파트)	1/9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전*혜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 , *동 ****호(오류동, **아파트)	1/9	-	-	-	
						조*윤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매*길 **(조촌동)	1/9	-	-	-	
						김*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길 * - *	1/9	-	-	-	
						박*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 ***동 ***호(장동, **아파트)	1/9	-	-	-	
						김*종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동둔길 ** - *	1/9	-	-	-	
5	기정	방화동 612-357	도로	87	87	서울특별시강서 구	-	1/1	-	-	-	
6	기정	방화동 619-4	도로	328	26	이*순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	1/2	-	-	-	
						이*남	뉴질랜드국 크리스처치시 아본헤드 브록크홀 통 **번지	1/2	-	-	-	
7	기정	방화동 619-98	도로	93	91	서울특별시강서 구	-	1/1	-	-	-	
8	기정	방화동 620-119	도로	395	137	국토교통부	-	1/1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4	대	126	48	최*섭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 **아파트 ***호	1/1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27(방화동)	근저당권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6	대	33	20	최*섭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 **아파트 ***호	1/1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27(방화동)	근저당권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7	대	23	1	이*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화동 *** - ***	160 /320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화동 ***-***	60 /320	-	-	-	
						노*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화동 ***-***	20 /320	-	-	-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화동 ***-***	40 /320	-	-	-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화동 ***-***	40 /320	-	-	-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8	대	55	45	최*섭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아파트 ***호	1/1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29-3	근저당권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29	대	43	35	최*섭	서울 강서구 방화동 ***-***	1/1	-	-	-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30	대	19	1	이*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길 **-*(방화동)	1/1	-	-	-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67	대	147	21	김*준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1/1	-	-	-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90	대	31	4	김*준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1/1	-	-	-	
	변경	-	-	-	-	-	-	-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삭제	기정	방화동 620-191	대	327	31	오*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 * ****아파트 ***- ****	1/1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	-	압류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93	대	103	37	이*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길 **- *(방화동)	1/1	-	-	-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195	대	34	4	오*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 * ****아파트 ***- ****	1/1	-	-	-	
	변경	-	-	-	-	-	-	-	-	-	-	
9	기정	방화동 620-247	도로	172	7	강서구	-	1/1	-	-	-	
10	기정	방화동 620-275	도로	1	1	서울특별시	-	1/1	-	-	-	
11	기정	방화동 620-276	도로	7	7	서울특별시	-	1/1	-	-	-	
12	기정	방화동 620-277	대	4	4	서울특별시	-	1/1	-	-	-	
13	기정	방화동 620-278	대	10	3	서울특별시	-	1/1	-	-	-	
14	기정	방화동 620-299	대	97	97	강*호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1/1	-	-	-	
15	기정	방화동 620-305	도로	8	8	서울특별시강서 구	-	1/1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48	대	36	22	주식회사사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9, 309- 2(고잔동, 우전빌딩)	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가양동지점)	근저당권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변경	-	-	-	-	-	-	-	-	-	-	
삭제	기정	방화동 620-49	대	73	47	주식회사시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9, 309-2(고잔동, 우진빌딩)	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가양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	-	-	-	-	-	-	-	-	-	
16	기정	방화동 620-6	구거	503	2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	-	-	
	변경	방화동 620-311	구거	191	191	서울특별시강서 구	-	1/1	-	-	-	
17	기정	방화동 621-1	구거	56	3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	-	-	
	변경	방화동 621-36	구거	36	36	서울특별시강서 구	-	1/1	-	-	-	
18	기정	방화동 621-24	대	945	82	김*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동 *호(양재동, ***빌라)	3/4	-	-	-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동 *호(양재동, ***빌라)	1/4	-	-	-	
	변경	방화동 621-24	대	945	82	주식회사 코인솔루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57(양재동, 신동아빌라)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평촌법계종합금융센터)	-	
19	기정	방화동 621-32	도로	72	8	장*하	서울 성동구 군자동 ***	1/2	강서세무서	-	압류	
									고양세무서	-	압류	
									강서구 (서울특별시)	-	압류	
						김*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동 *호(양재동, ***빌라)	3/8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동 *호(양재동, ***빌라)	1/8	-	-	-	
	변경	방화동 621-32	도로	72	8	장*하	서울 성동구 군자동 ***	1/2	강서세무서	-	압류	
									고양세무서	-	압류	
									강서구(서울특별시)	-	압류	
						주식회사 코원솔루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57(양재동, 신동아빌라)	1/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평촌법계종합금융센터)	-	
20	기정	방화동 621-33	도로	58	9	고*만	서울 강서구 방화동 ***- **	1/1	-	-	-	
21	기정	방화동 621-34	대	53	53	이*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길 **, ***동 ****호(신정동, ****아파트)	1/1	-	-	-	
22	기정	방화동 621-35	대	35	35	권*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 **	1/1	-	-	-	

◆ 구로구고시 제2022-87호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7호(2016.03.31.)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구로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3. 면 적 : 1,651.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녹색도시과(☎ 860-2321)

보광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51.00	983.00				38	
공 원 시 설	소 계	983.00				38	
	기 반 시 설	소계	373.30	373.30		-	
		광장	37.60	37.60		-	
		도로	335.70	335.70		-	
	휴양시설		129.60	129.60		8	
	유희시설		403.60	403.60		8	
	운동시설		76.50	76.50		5	
	관리시설		-	-		17	
	녹 지 기 타	668.00	-			-	
	시 설 율 (법정 60%)	$(983.00\text{㎡} \div 1,651.00\text{㎡}) \times 100 = 59.54\%$					
	건 폐 율 (법정 5%)	$(0.0\text{㎡} \div 0.0\text{㎡}) \times 100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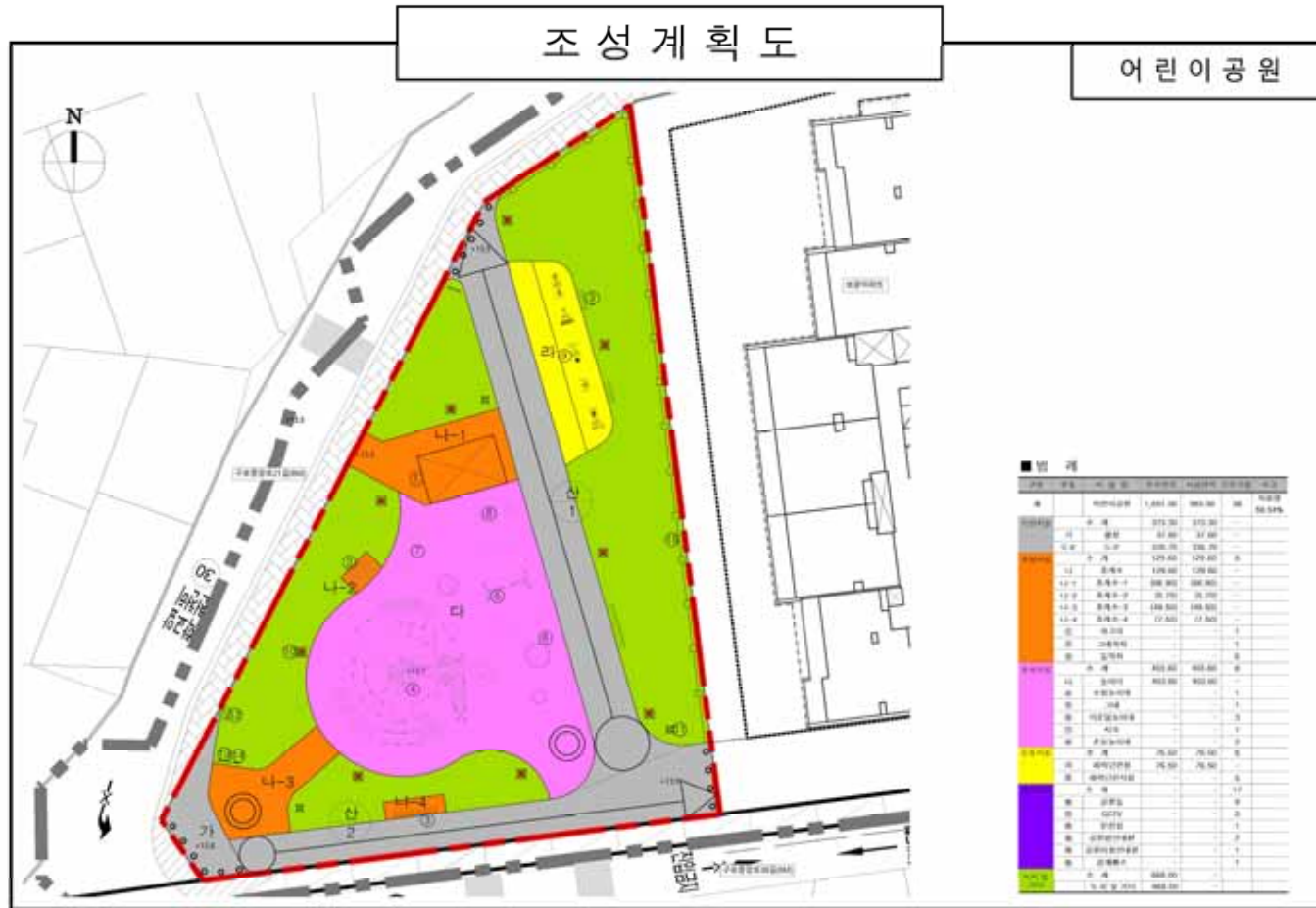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1,651.00	983.00					38	
기 반 시 설	계			373.30	373.30					-	
	광 장	가	부지내	37.60	37.60					-	
	도 로		〃	335.70	335.70					-	
휴 양 시 설	계			129.60	129.60					8	
	휴게소	나	부지내	129.60	129.60					-	
	휴게소 - 1	나 - 1	〃	(66.90)	(66.90)					-	
	휴게소 - 2	나 - 2	〃	(5.70)	(5.70)					-	
	휴게소 - 3	나 - 3	〃	(49.50)	(49.50)					-	
	휴게소 - 4	나 - 4	〃	(7.50)	(7.50)					-	
	파고라	①	〃	-	-					1	
	그네의자	②	〃	-	-					1	
	등의자	③	〃	-	-					6	
유 회 시 설	계			403.60	403.60					8	
	놀이터	다	부지내	403.60	403.60					-	
	조합놀이대	④	〃	-	-					1	
	그네	⑤	〃	-	-					1	
	마운딩놀이대	⑥	〃	-	-					3	
	시소	⑦	〃	-	-					1	
	흔들놀이대	⑧	〃	-	-					2	
운 동 시 설	계			76.50	76.50					5	
	체력단련장	라	부지내	76.50	76.50					-	
	체력단련시설	⑨	〃	-	-					5	
관 리 시 설	계			-	-					17	
	공원등	⑩	부지내	-	-					9	
	CCTV	⑪	〃	-	-					3	
	분전함	⑫	〃	-	-					1	
	공원명안내판	⑬	〃	-	-					2	
	공원이용안내판	⑭	〃	-	-					1	
	경계웬스	⑮	〃	-	-					1	
녹지 및 기타				668.0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00.5	335.7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3	1	4.0	46.3	194.5	산책로	산-2 산책로	북측 대지경계	
신설	산책로	3	2	3.0	39.7	141.2	산책로	가 광장	동측 대지경계	



◆ 동작구고시 제2022-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304호(2021.12.16.)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88-76 등 18필지 (변경없음)
- 면 적 : 당초 - 93,233㎡
 변경 - 82,883.9㎡ (감 10,349.1㎡)

※ 변경사유 : 흑석동 산88-76, 흑석동 산79-2 국유지 지분 감, 그 외 변경없음

연번	지 번	지적면적(㎡)	보상대상면적(㎡)		증감면적(㎡)	비고
			당초	변경		
	2필지	10,496	10,496	146.9	감) 10,349.1	
1	흑석동 산88-76	4,717	4,717	21.3	감) 4,695.7	국유지 지분 10,349.1㎡ 감
2	흑석동 산79-2	5,779	5,779	125.6	감) 5,653.4	

- 내 용 : 당초 - 토지보상 93,233㎡,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변경 - 토지보상 82,883.9㎡,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계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계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1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2-10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72호(2009.1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12.2.)로 각각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2-12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
 - 나. 명 칭: 강동구 천호동 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수영장) 신축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가. 공공청사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비 고
공공청사	천호동 422-12	1,406.2	2,971.96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 나. 주차장, 체육시설(수영장)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비 고
주차장	천호동 422-12	6,827.2	17,252.06	공공청사 및 소공원(천호1·3) 중복결정
체육시설(수영장)			2,013.68	

※ 대지면적은 공공청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 합산면적임 (공공청사: 1,406.2㎡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3,115.0㎡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2,30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일: 2022. 5. 25.)
 - 가. 성 명: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김 중 광
 - 나.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302호 (천호동 문화빌딩)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2. 5. 2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2-650호

도시관리계획(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3-286호(2013.09.05.)로 구역 및 계획 결정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및 계획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022년 6월 2일

종로구청장

1. 공람공고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63), 평창동주민센터(☎02-2148-5122)
3. 공람내용 :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구역 및 계획내용 재정보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면적오기 정정 및 구역경계 조정)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면적오기 정정 및 구역계 조정에 따른 증가분 반영)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문화시설 신설 및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 : 변경(조서 및 도면 신설)
 -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 : 변경(지역자산 현황여건 반영)
 -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기 개발지 대지분할기준 신설)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조건부 허용용도 신설 및 용도계획 세분화)
 -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자연경관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건 변경)
 -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 변경(기 개발지 건축선 신설, 원형택지 자연상태 보존용역 위치지정)
 -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 : 변경(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 신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민간시행 지침 : 변경(원형택지 높이 산정기준 및 암반 굴착기준)

※ 상세 계획내용 조서는 공람공고 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도면 : 게재생략(공람공고 장소에 도서 비치)

5.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공고 제2022-651호**

**도시관리계획(울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이화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4·5·6가, 예지동 일대 울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종로구청장

가. 구 역 명 : 울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울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 5·6가동 일대	446,340	감) 5,405	440,935	-
변경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299,647	증) 185	299,832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종로5·6가동주민센터, 이화동주민센터

마. 열람내용 : 울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바.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사. 의견제출장소 : 종로구 건축과(☎02-2148-2814)

◆ 중구공고 제2022-40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003-33호(2004. 1. 3.)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우리 구 봉래동2가 122-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안)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1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명 칭 : 경부고속철도 서울민자역사 건설사업
 - 3) 사업시행규모 또는 면적
 - 면 적 : 2,27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17, 304호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다.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5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구 봉래동2가	122	철도용지	4,584.7㎡	+112.47㎡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2	중구 봉래동2가	122-11	철도용지	10,063㎡	-2,27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3	중구 봉래동2가	122-14	철도용지	3,044.4㎡	+545.12㎡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4	중구 봉래동2가	122-15	철도용지	19,284.1㎡	+1,613.4㎡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합 계				36,976.2㎡	0㎡	-	-	-	-

◆ 성북구공고 제2022-76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을 위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공고**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39호(2006.10.9.)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109호(2021.06.25.)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성북구 성북동 131-161 일대 와룡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31-161번지 등 2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2020 와룡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5,035.6㎡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기간(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존 : 2020. 6. 24. ~ 2022. 6. 23.

- 변경 : 2020. 6. 24. ~ 2025. 6. 23.

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 불임참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공고 제2022-7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

1.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2021년도에 공사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및 공사완료 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작성일(최종)	사업기간
늘푸른길 확장사업 (3차구간)	돈암동 산 7-1 ~ 돈암동 산 11-293	B = 6→10m L = 350m	성북구고시 제2020-228호 (2020.12.31.)	2020. 4. 9. ~ 2021.11.30.
늘푸른길 확장사업 (4차구간)	안암동5가 126-30	B = 6→10m L = 110m	성북구고시 제2020-123호 (2020.7.16.)	2020.1.30. ~ 2021.11.30.
종암동 16-10 ~ 16-16간 도로 확장공사	종암동 16-10 ~ 16-16	B = 3→8m L = 26m	성북구고시 제2020-136호 (2020.7.30.)	2020. 6.25. ~ 2021.12.2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도로과에 비치)

◆ 성북구공고 제2022-7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32호(1990. 10. 12.)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0-691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100호(2020. 6. 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된 「동소문동4가 271 ~ 278-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단
2.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동소문동4가 271~278-1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동소문동4가 271 ~ 278-1	· B = 15m · L = 26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32호 (1990. 10. 1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성북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따로붙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 02-2241-3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동소문동4가 271~278-1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대지권 비율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소문동4가 271	대지	209.8	44.3		노*조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 ***아파트 1**-11**				분할예정
2	동소문동4가 272	대지	108.4	20.2		장*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지원센터)	근저당권	분할예정
3	동소문동4가 273	대지	107.1	19.2		이*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분할예정
4	동소문동4가 247	대지	202.3	37.6		김*열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아파트 1**-8**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분할예정
5	동소문동4가 248-3	대지	47.9	47.9	1/2	안*택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층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1/2	이*주					
6	동소문동4가 221	대지	136.5	30.6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25길 **(공덕동)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화로18길 *	근저당권	분할예정
7	동소문동4가 222	대지	118.3	4.4		오*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 ***호(동소문동4가, **빌라)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분할예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대지권 비율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동소문동4가 223	대지	98.5	18		오*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 ***호(동소문동4가, **빌라)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분할예정
9	동소문동4가 197-1	대지	11.5	11.5	1/2	구*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2* - *(동소문동4가)	삼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	근저당권	
					1/2	이*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포도원로27번길**, 1**동9**호(호계동, ****아파트)				
10	동소문동4가 198-1	대지	13.4	13.4		이*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 2**동 15**호(돈암동, **아파트)	삼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	근저당권	
11	동소문동4가 199	대지	171.9	24.2	1/2	이*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1* - * ****아파트 5**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분할예정
					1/2	전*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1* - * ****아파트 5**호				
12	동소문동4가 203	대지	109.8	3.9		지*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동소문동4가)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분할예정
13	동소문동4가 204	대지	59.2	11		지*남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분할예정
14	동소문동4가 205-3	대지	192.3	20.3		소*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 1**동 10**호(돈암동, ****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분할예정
15	동소문동4가 205	대지	198.5	25.6		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9길 **, 9**동 10**호(길음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분할예정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동소문동4가 271~278-1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동소문동4가 272	건물	목조와집 및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1층 2층 3층	23m2 23m2 23m2	장*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 (*****지원센터)	근저당권	
2	동소문동4가 27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1층 2층 3층 옥탑 계단	16.3m2 16.3m2 16.3m2 1.2m2 15.9m2	이*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				
3	동소문동4가 22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1층 2층 3층 창고 계단	25.8m2 25.8m2 25.8m2 5.8m2 2.6m2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25길 **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8길 *	근저당권	
4	동소문동4가 204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2층	11.6m2 11.6m2	지*남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				
5	동소문동4가 205	건물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슬래	1층 2층 3층 계단	12.6m2 12.6m2 12.6m2 1.9m2	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 9**동 10**호(길음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 동작구공고 제2022-935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60(2018.1.18.) 및 제2019-213(2019.2.21.)호로 열람공고한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2022.4.21.,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	증)12,851.22	12,851.22	-

※ 결정사유: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12,851.22	-	12,851.2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2.95	-	1,602.95	12.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1,248.27	감)11,248.27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1,248.27	11,248.27	87.5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공공기여 및 공공주택에 관한 결정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2022. 6. 2.(목) ~ 6. 16.(목)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도시계획과)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02-820-9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2-114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472호(2009. 11. 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 10.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 12. 2.)로 각각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2-12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
 - 나. 명 칭: 강동구 천호동 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수영장) 신축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가. 공공청사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비 고
공공청사	천호동 422-12	1,406.2	2,971.96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나. 주차장, 체육시설(수영장)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비 고
주차장	천호동 422-12	6,827.2	17,252.06	공공청사 및 소공원(천호1·3) 중복결정
체육시설(수영장)			2,013.68	

※ 대지면적은 공공청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 합산면적임
(공공청사: 1,406.2㎡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3,115.0㎡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2,30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일: 2022. 5. 25.)

가. 성 명: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김 중 광

나.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302호 (천호동 문화빌딩)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일로부터 2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등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천 호 동	422-2	대	2,155.0	13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422-12	대	4,222.0	298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423-100	대	157.0	1.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강동빌딩)	천호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원 소계		6,534.0	3,115.0	-	-	-	-	-
	375-55	도	13.2	13.2	-	서울시			
	382-38	도	36.0	36.0	-	강동구			
	422-12	대	4,222.0	1,231.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423-298	도	126.0	126.0	-	강동구			
	공공청사 소계		4,397.2	1,406.2					

나.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등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천 호	422-1	대	356.0	295.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강동빌딩)	천호3주택재건축사업조합			
	422-11	대	63.0	63.0	상동	상동			

소재지		지목	공분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노	423-285	대	211.0	211.0	상동	상동			
	423-86	대	106.0	28.0	상동	상동			
	423-91	대	123.0	25.0	상동	상동			
	423-92	대	96.0	35.0	상동	상동			
	423-93	대	96.0	49.0	상동	상동			
	423-94	대	109.0	71.0	상동	상동			
	423-95	대	119.0	119.0	상동	상동			
	423-96	대	129.0	129.0	상동	상동			
	423-97	대	126.0	126.0	상동	상동			
	423-98	대	165.0	165.0	상동	상동			
	423-100	대	157.0	157.0	상동	상동			
	423-132	대	116.0	116.0	상동	상동			
	423-133	대	89.0	24.0	상동	상동			
	423-134	대	96.0	16.0	상동	상동			
	423-135	대	86.0	86.0	상동	상동			
	423-136	대	86.0	86.0	상동	상동			
	423-137	대	96.0	6.0	상동	상동			
	423-138	대	96.0	1.0	상동	상동			
	423-139	대	182.0	159.0	상동	상동			
	423-142	대	99.0	99.0	상동	상동			
	423-143	대	106.0	106.0	상동	상동			
	423-144	대	126.0	126.0	상동	상동			
	423-250	도	8.0	8.0	-	강동구			
	공원소계		3,042.0	2,306.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 12. 02.)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금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되는 공공청사, 주차장, 체육시설(수영장)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청사, 주차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체육시설(수영장)은 강동구가 매입함
8.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6. 2. ~ 2022. 6. 16.)
9. 열람장소: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1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한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대진물산 잠실마리나지점 (대표 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잠실대교 ~ 청담대교	선박 34척 (110.8㎡)	수상레저사업	2022.5.20. ~ 2022.10.31.	2022. 5.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반포대교)	선박 2척	정밀점검	2022.5.23.~ 2022.5.31.	2022. 5.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양화대교)	선박 2척	정밀점검	2022.6.2.~ 2022.6.30.	2022. 5.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시계 내 한강 (동호철교)	선박 2척	정밀점검	2022.5.30.~ 2022.6.26.	2022. 5.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 3척	영상제작	2022.5.29.~ 2022.5.30.	2022. 5.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 2척	영상제작	2022.5.31.~ 2022.6.1.	2022. 5.26.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9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5번지 일원
 - 면 적: 2,0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야외무대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 내 역: 야외무대 1식 및 어린이 놀이터 1식
5. 점용기간: (당초) 2017. 06. 07. ~ 2022. 06. 06.
(변경) 2022. 05. 23. ~ 2027. 06. 30.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8호

중랑구 목동 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1-576호(2021.10.2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중랑구 목동8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오기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I.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6호(2021.10.21.)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 중 ‘공공 기여 계획’ 의 기부채납 면적 및 비율 오기되어 이를 정정하는 사항임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5. 인구·주택 수용계획

<정정 전>

- 1) 수용인구 : 1,110인
- 2) 주택건설계획 : 724세대 (공공임대주택 239세대, SH선매입 19세대, 민간임대 466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 임대 주택	23 TYPE	73	10.08%	73	6.58%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5 TYPE	75	10.36%	75	6.76%	
	49S TYPE	18	2.49%	36	3.24%	
	50A TYPE	54	7.46%	143	12.89%	
	50B TYPE	10	1.38%	26	2.39%	
	52C TYPE	9	1.24%	23	2.15%	
	소계	239	33.01%	378	34.05%	
sh선매입	23 TYPE	8	1.10%	8	0.72%	
	25 TYPE	7	0.97%	7	0.63%	
	50A TYPE	4	0.55%	10	0.95%	
	소계	19	2.62%	25	2.25%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3 TYPE	153	21.13%	153	13.78%	
	25 TYPE	152	20.99%	152	13.69%	
	49S TYPE	32	4.42%	64	5.77%	
	50A TYPE	98	13.54%	259	23.40%	
	50B TYPE	16	2.21%	42	3.82%	
	52C TYPE	15	2.07%	39	3.58%	
	소계	466	64.36%	707	63.69%	
합 계		724	100.00%	1,110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정정 후>

1) 수용인구 : 1,110인

2) 주택건설계획 : 724세대(공공임대주택 : 277세대 (공공기여258세대, SH선매입 19세대),
민간임대 447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 임대 주택	공공 기여	23 TYPE	81	11.19%	81.0	7.3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5 TYPE	82	11.33%	82.0	7.39%	
		49S TYPE	18	2.49%	36.0	3.24%	
		50A TYPE	58	8.01%	153.0	13.79%	
		50B TYPE	10	1.38%	26.0	2.34%	
		52C TYPE	9	1.24%	23.0	2.07%	
		소계	258	35.64%	401.0	36.13%	
	sh 선매입	23 TYPE	8	1.10	8.0	0.72%	
		25 TYPE	7	0.97	7.0	0.63%	
		50A TYPE	4	0.55	10.0	0.90%	
		소계	19	2.62%	25.0	2.25%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3 TYPE	145	20.03%	145.0	13.06%		
	25 TYPE	145	20.03%	145.0	13.06%		
	49S TYPE	32	4.42%	64.0	5.77%		
	50A TYPE	94	12.98%	249.0	22.43%		
	50B TYPE	16	2.21%	42.0	3.79%		
	52C TYPE	15	2.07%	39.0	3.51%		
	소계	447	61.74%	684.0	61.62%		
합 계			724	100.00%	1,110.0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정정 전>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공공기여율 - 20%(849.18㎡)이상 •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 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 분 • SH선매입 - 주거 연면적의 30% 이하	• 총 공공기여 - 34.18%(1,451.06㎡)	기본용 적률 54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목동 8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 이상 20% 이하	• 4,044.21㎡(10.59%)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 80% 이상 90% 이하	• 34,158.64㎡(89.41%)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1인 세대(세어형포함) - 전용 18㎡ 이상 • 2인 이상 - 전용 36㎡ 이하 • 세대유형별 설치비율 - 1인 세대:2인 이상 = 7:3	• 공공임대(239세대) : SH선매입(19세 대) : 민간임대(466세대) = 33.01% : 2.62% : 64.37% • 1인 전용 18㎡, 20㎡ • 2인 세어 전용 39㎡S • 신혼부부 전용 39㎡A, 39㎡B, 39㎡ C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 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 (전체건립호 - 299호)×2.5㎡×1.25배 이상 = 1,328.13㎡	•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2,411.6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정정 후>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공공기여율 - 20%(849.18㎡)이상 -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 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 분	총 공공기여 - 32.21%(1,367.69㎡)	기본용 적률 54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량구 목동 8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 이상 20% 이하	4,044.21㎡(10.59%)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 80% 이상 90% 이하	34,158.64㎡(89.41%)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1인 세대(세어형포함) - 전용 18㎡ 이상 2인 이상 - 전용 36㎡ 이하 - 세대유형별 설치비율 - 1인 세대:2인 이상 = 7:3	- 공공임대(258세대) : SH선매입(19세 대) : 민간임대(447세대) = 35.64% : 2.62% : 61.74% 1인 전용 18㎡, 20㎡ 2인 세어 전용 39㎡S - 신혼부부 전용 39㎡A, 39㎡B, 39㎡ C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 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전체건립호 - 299호)×2.5㎡×1.25배 이상 = 1,328.13㎡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2,411.6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정정 전>

6) 공공기여계획

구분	용적률계획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면적(m ²)	종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기본용적률 540% 이하	대지지분 기준 - 849.18m ² (20.00%)	851.91m ² (20.06%)	공공임대주택 90세대	
	상한용적률 900% 이하	완화 받은 용적률의 대지지분 산정 - 완화 받은 용적률의 50% 이상	848.88m ² (19.99%)	공공임대주택 168세대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정정 후>

6) 공공기여계획

구분	용적률계획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면적(m ²)	종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기본용적률 540% 이하	대지지분 기준 - 849.18m ² (20.00%)	858.12m ² (20.21%)	공공임대주택 90세대	
	상한용적률 900% 이하	완화 받은 용적률의 대지지분 산정 - 완화 받은 용적률의 50% 이상	853.14m ² (20.09%)	공공임대주택 168세대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제2021-576호(2021.10.2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중랑구 목동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오기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중랑구 목동 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빅히트	김민채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6, 1동 805호

※ 담보신탁: 위탁자(주식회사 빅히트), 수탁자(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8번지
- 나. 대지면적 : 4,245.9㎡
- 다. 건폐율 : 59.57%(건축면적 : 2,529.14㎡)
- 라. 용적률 : 899.76%(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38,202.85㎡)
- 마. 용도
 <정정 전> 공동주택(공공임대 239세대/SH선매입 19세대/민간임대 466세대), 근린생활시설
 <정정 후> 공동주택(공공임대 258세대/SH선매입 19세대/민간임대 447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모 : 1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 연면적 53,573.81㎡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동작구고시 제2022-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2호(1974. 5. 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 6.25.)로 그 결정이 실효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및 제2021-299호(2021.1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정사항 : 최초 결정고시일 및 고시번호

나. 정정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최초결정일 등 오기사항 정정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정정 전	기정	소로	3		6		400	상도동 214-218	상도동 210-18	일반 도로		서울시 54 (1973. 4.30.)	미집행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3		6		360	상도4동 215-13	상도4동 210-18	일반 도로			
정정 후	기정	소로	3		6		400	상도동 214-218	상도4동 210-18	일반 도로		서울시 52 (1974. 5. 3.)	미집행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3		6		360	상도4동 215-13	상도4동 210-18	일반 도로			

3. 지형도면 : 변경 없음.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335), 도로관리과(☎820-99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2호(1974. 5. 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 6.25.)로 그 결정이 실효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1-251호(2021.10.28.) 및 제2021-30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정사항 : 연장 및 종점의 주소 등

나. 정정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종점 등 오기사항 정정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정정 전	기정	소로	3		6		360	상도4동 215-13	상도4동 310-18	일반 도로		서울시 52 (1974. 5. 3.)	
		변경	소로	3		6		360	상도4동 215-37	상도4동 210-18	일반 도로			
	정정 후	기정	소로	3		6		360	상도4동 215-13	상도4동 210-18	일반 도로		서울시 52 (1974. 5. 3.)	
		변경	소로	3		6		360	상도4동 215-37	상도4동 210-18	일반 도로			

3. 지형도면 : 변경 없음.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335), 도로관리과(☎820-99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